동북아역사재단 종합감사 결과

1. 감사 개요

가. 감사기간 : 2020. 4. 6. ~ 4. 14. [토·일 제외 7일간]

나. 감사인원 : 7명

2. 감사결과 지적사항

가. 유형별 지적건수

구 분	조직·인사	예산·회계	연구·사업	계
지적건수	6	9	7	22

나. 세부지적 및 처분 : “붙임” 처분서 참고

감사결과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입니다. 따라서 감사결과 실명이 공개된 모든 기관이 비리에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	**연구직 직원 채용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결정, 시험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거나 재단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은 '직무관련자'로 되어 있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사장에게 서면으로 직무 재배정 등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년 한일역사 현안분야 연구직(4급) 2명의 직원 채용을 진행하면서 A이(가) 응시자 서류접수 현황을 보고받고 결재하여 응시자(12명) 중 A 본인과 사제지간이므로 '직무관련자'에 해당하는 B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는데도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기피 등 아무런 조치 없이 채용과정을 진행하였고, 1차 서류 전형 및 2차 면접 전형 후 규정에도 없는 별도 면담을 통하여 면담 참여자 3인의 의견을 참고하여 인사위원회 추천 후보자 2순위 대신 3순위인 B을(를) 임용 결정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위 재단은 직원 채용 시 전형위원회 위원이 채용	○ **경고(6명)** ○ **개선** - 이사장이 채용대상자와 사제지간 등 사적이해관계인 경우 신고나 기피 등 조치할 수 있도록 「동북아역사재단임직원행동강령」과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전형 대상자와 사제지간인 경우 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며 해당 전형을 회피하도록 규정(「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 제16조의2 제3항)하면서도 최종 임용권자인 이사장이 채용 전형 대상자와 사제지간인 경우 회피 의무 등을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은 사실이 있음.	

【참고】

2018년 한일역사 현안분야 연구직(4급) 채용 현황

순위	성명	최종 점수	채용 여부
1	-	-	○
2	-	-	
3	B	-	○
4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2	**퇴직준비 휴가 및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 부적정**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제4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에 대해 사회통념상 과도한 복리후생제도(휴가·휴직제도 등) 운영을 지양하고 국가공무원의 복리후생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국가공무원에 대하여 운영되지 않는 복리후생 제도를 원칙적으로 운영할 수 없고,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연차 유급휴가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른 휴가제도는 운영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도, **【퇴직준비 휴가 운영에 관한 사항】** …… ① - 동북아역사재단은 설립당시인 2006. 10. 4. 「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을 제정하면서 제27조(특별휴가) 제5항에 '직원이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할 경우 퇴직예정일 전 3월이 되는 날로부터 퇴직예정일 전일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얻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20.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 이에 따라 동북아역사재단 C에게 2017. 4. 1.부터 2017. 6. 30.까지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하고 휴가 기간 중 보수 15,760,650원을 지급하는 등 【붙임】 "퇴직준비 휴가 운영 현황"과 같이 2017. 4.부터 2019. 12.까지 위 C 등 6명에게 3개월간 '퇴직준비 휴가'를 부여	**【①,② 관련】** **○ 기관경고** **【① 관련】** **○ 개선**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과 달리 운영하고 있는 퇴직준비 휴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관련 법령과 지침에 맞게 자체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② 관련】** **○ 개선** - 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지 않도록 자체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하고 휴가기간 중 보수 합계 93,515,58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창립기념일 유급휴일 운영에 관한 사항】 …… ②** - 동북아역사재단은 재단 창립기념일인 2017. 9. 22.(금) 「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 제21조(휴일) 제1항 제2호('정부 또는 재단이 정하는 날'을 재단 공휴일로 규정)와 '재단 창립기념 휴무계획 보고[기획조정실-1003, 2017.9.14.]'를 근거로 유급휴일을 운영하여, 당일 휴무한 임직원 97명에게 연차휴가수당 합계 13,951,160원을 지급하고, 당일 근무한 직원 1명에게는 휴일근무수당 128,880원을 지급하는 등 임직원 98명에게 창립기념일 운영에 따른 수당 합계 14,080,040원을 지급하였으며, · 특히, 2018. 9. 3.「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 제21조(휴일) 제1항 제3호를 신설하여 창립기념일을 재단 공휴일로 규정화한 사실이 있음. ※ 2018~2019년 창립기념일(9.22.)은 각 토·일요일로 유급휴일 미운영	

【붙임】

퇴직준비 휴가 운영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퇴직 전 휴가기간	휴가기간 보수지급액	재단 근무기간	비고
1	-	-	-	'17.4.1.~ 6.30.	15,760,650	10년 9개월 ('06.10.1. ~ '17.6.30.)	정년퇴직
2	-	-	-	'17.10.1.~ 12.31.	16,049,520	10년 11개월 ('07.1.22. ~ '17.12.31.)	
3	-	-	-	'17.10.1.~ 12.31.	12,949,530	11년 3개월 ('06.10.1. ~ '17.12.31.)	
4	-	-	-	'18.4.1.~ 6.30.	16,579,620	11년 ('07.7.2. ~ '18.6.30.)	
5	-	-	-	'18.10.1.~ 12.31.	15,278,610	12년 3개월 ('06.10.1. ~ '18.12.31.)	
6	-	-	-	'19.10.1.~ 12.31.	16,897,920	13년 3개월 ('06.10.1. ~ '19.12.31.)	
합계					93,515,85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3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관리 등**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임직원행동강령」 제20조에 따르면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동북아역사재단 소유의 재산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는데도,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관리에 관한 사항】** …… ① - 동북아역사재단은 D이(가)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의 일본 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516마일을 적립하고 있음에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는 등 【붙임1】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관리 현황"과 같이 2017. 1.부터 2020.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D 등 임직원 125명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현황을 파악하지 않고 공적 항공마일리지 적립·활용에 관한 자체 규정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에 관한 사항】** …… ② - 동북아역사재단 E은(는) 2019. 6. 22. 공무국외출장(기간 : 2017.7.2.~2017.7.9. / 장소 : 미국)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13,888마일을 개인여행 시 사적으로 사용하는	**【①관련】** **○ 기관경고** **○ 개선** - 공무 출장으로 발생하는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기 바람 **【②관련】** **○ 주의(2명)** **○ 시정** - 2명이 사적으로 사용한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현금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시행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등【붙임2】“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현황”과 같이 위 E 등 2명은 2018. 8.부터 2019. 6.까지 공무 국외출장으로 발생한 공적 항공마일리지 합계 23,888 마일을 개인여행 시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공적 항공마일리지 미관리 현황

(단위 : 마일)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1	-	-	D	일본	'17.1.23.~'17.1.25.	-	1,516
2	-	-	-	일본	'17.2.7.~'17.2.12.	-	1,516
3	-	-	-	중국	'17.2.13.~'17.2.15.	-	676
4	-	-	-	일본	'17.2.16.~'17.2.19.	-	1,181
5		-	-				1,181
6	-	-	-	일본	'17.2.21.~'17.2.24.		미적립
7	-	-	-	일본	'17.2.21.~'17.2.24.	-	1,050
8	-	-	-	미국	'17.2.22.~'17.2.27.	-	12,238
9	-	-	-	홍콩	'17.2.22.~'17.2.28.	-	미적립
10	-	-	-	일본	'17.3.7.~'17.3.10.	-	미적립
11	-	-	-	일본			790
12	-	-	-	일본			미적립
13	-	-	-	일본			미적립
14	-	-	-	캐나다	'17.3.15.~'17.3.22.	-	13,204
15	-	-	-				13,204
16	-	-	-				13,204
17	-	-	-				13,204
18	-	-	-				13,204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19	-	-	-	스페인	'17.4.1.~'17.4.8.	-	12,454
20	-	-	-	미국	'17.4.2.~'17.4.8.	-	13,076
21	-	-	-	미국	'17.4.4.~'17.4.14.	-	9,392
22		-	-		'17.4.4.~'17.4.10.		9,392
23	-	-	-	중국	'17.4.7.~'17.4.15.	-	906
24		-	-	중국			568
25	-	-	-	중국	'17.4.11.~'17.4.14.	-	미적립
26	-	-	-	중국			568
27	-	-	-	제주	'17.4.13.~'17.4.14.	-	미적립
28	-	-	-				미적립
29	-	-	-	중국	'17.4.18.~'17.4.21.	-	568
30	-	-	-	모나코	'17.4.21.~'17.4.30.	-	11,278
31	-	-	-	러시아	'17.4.22.~'17.4.26.	-	1,748
32	-	-	-	중국	'17.4.23.~'17.4.26.	-	796
33	-	-	-				796
34	-	-	-	일본	'17.4.23.~'17.4.27.	-	1,516
35	-	-	-	제주	'17.4.25.	-	552
36	-	-	-	태국	'17.5.2.~'17.5.6.	-	4,572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37	-	-	-	베트남	'17.5.3.~'17.5.8.	-	미적립
38		-	-				3,368
39	-	-	-				3,368
40	-	-	-				3,368
41	-	-	-				미적립
42		-	-				3,368
43	-	-	-				3,368
44		-	-				3,368
45	-	-	-				3,368
46	-	-	-				3,368
47	-	-	-	일본	'17.5.23.~'17.5.28.	-	1,283
48	-	-	-	일본			1,679
49	-	-	-	일본			1,283
50	-	-	-	일본			1,050
51	-	-	-	중국	'17.5.25.~'17.5.30.	-	1,545
52	-	-	-	중국	'17.5.25.~'17.5.28.	-	미적립
53	-	-	-				2,448
54	-	-	-	제주	'17.6.1.~'17.6.2.	-	552
55	-	-	-	일본	'17.6.2.'17.6.6.	-	1,562
56	-	-	-	중국	'17.6.11.~'17.6.18.	-	525
57	-	-	-	미국	'17.6.21.~'17.6.25.	-	9,120
58	-	-	-				9,120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 마일리지
59	-	-	-	독일	'17.6.23.~'17.6.30.	-	미적립
60	-	-	-	네덜란드	'17.6.27.~'17.7.6.	-	2,720
61	-	-	-	미국	'17.7.2.~'17.7.9.	-	13,888
62	-	-	-	중국	'17.7.3.~'17.7.6.	-	846
63	-	-	-				676
64	-	-	-				676
65	-	-	-	일본	'17.7.5.~'17.7.7.	-	1,516
66	-	-	-	중국	'17.7.9.~'17.7.13.	-	미적립
67	-	-	-	일본	'17.7.10.~'17.7.15.	-	1,516
68	-	-	-	중국	'17.7.14.~'17.7.21.	-	676
69	-	-	-	일본	'17.7.24.~'17.7.28.	-	1,516
70	-	-	-	중국	'17.7.26.~'17.7.31.	-	1,764
71	-	-	-	미국	'17.7.26.~'17.8.3.	-	10,872
72	-	-	-	러시아	'17.7.26.~'17.8.22.	-	952
73	-	-	-	중국	'17.7.31.~'17.8.4.	-	724
74	-	-	-				724
75	-	-	-	일본	'17.8.1.~'17.8.4.	-	1,050
76		-	-				미적립
77		-	-				미적립
78	-	-	-	중국	'17.8.8.~'17.8.11.		미적립
79	-	-	-	중국			1,190
80	-	-	-	중국			미적립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 마일리지
81	-	-	-	중국	'17.8.8.~'17.8.13.	-	1,083
82	-	-	-	일본	'17.8.11.~'17.8.14.	-	1,516
83	-	-	-	중국	'17.8.22.~'17.8.29.	-	미적립
84	-	-	-	중국	'17.8.25.~'17.8.29.	-	772
85	-	-	-	중국	'17.8.26.~'17.9.1.	-	676
86	-	-	-	중국	'17.8.27.~'17.9.2.	-	미적립
87	-	-	-	미국	'17.9.3.~'17.9.13.	-	13,888
88		-	-				13,888
89	-	-	-	중국	'17.9.7.~'17.9.11.	-	525
90	-	-	-	독일	'17.9.7.~'17.9.12.	-	10,720
91		-	-	독일			10,720
92	-	-	-	제주	'17.9.14.~'17.9.15	-	미적립
93	-	-	-				100
94	-	-	-	중국	'17.9.21.~'17.9.23.	-	1,136
95	-	-	-	우즈베키스탄	'17.9.24.~'17.9.30.	-	6,026
96		-	-				6,026
97	-	-	-	중국	'17.9.25.~'17.9.29.	-	772
98		-	-				미적립
99	-	-	-	미국	'17.9.26.~'17.10.2.	-	10,872
100	-	-	-	일본	'17.10.2.~'17.10.5. '17.10.12.~'17.10.14.	-	2,100
101	-	-	-	일본	'17.10.6.~'17.10.9.	-	1,057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102	-	-	-	미국	'17.10.10.~'17.10.15.	-	10,522
103	-	-	-	러시아	'17.10.12.~'17.10.18.	-	8,984
104	-	-	-	모나코, 독일	'17.10.15.~'17.10.26.	-	11,680
105	-	-	-	독일	'17.10.21.~'17.10.26.		9,648
106		-	-				미적립
107	-	-	-	중국	'17.10.16.~'17.10.22.	-	676
108	-	-	-	중국	'17.10.18.~'17.10.25.	-	미적립
109	-	-	-	홍콩	'17.10.23.~'17.10.25.	-	1,295
110	-	-	-	중국	'17.10.25.~'17.11.1.	-	568
111	-	-	-	중국	'17.10.29.~'17.11.2.	-	1,136
112	-	-	-	러시아	'17.10.29.~'17.11.5.	-	952
113	-	-	-	대만	'17.10.30.~'17.11.1.	-	미적립
114	-	-	-	대만	'17.11.2.~'17.11.5.	-	1,828
115	-	-	-	대만	'17.11.2.~'17.11.5.		미적립
116	-	-	-	러시아	'17.11.6.~'17.11.10.	-	8,192
117	-	-	-				8,192
118	-	-	-				4,096
119	-	-	-				8,192
120	-	-	-	폴란드	'17.11.11.~'17.11.17.	-	미적립
121	-	-	-		'17.11.11.~'17.11.17.		2,908
122	-	-	-	영국	17.11.12.~'17.11.19.	-	미적립
123	-	-	-	일본	'17.11.17.~'17.11.21.	-	미적립
124	-	-	-	일본			미적립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125	-	-	-	러시아	'17.11.22.~'17.11.25.	-	952
126	-	-	-	일본	'17.11.24.~'17.11.26.	-	1,516
127	-	-	-	일본	'17.12.7.~'17.12.9.	-	1,368
128	-	-	-	일본	'17.12.20.~'17.12.23.	-	694
129	-	-	-				694
130	-	-	-				694
131	-	-	-				미적립
132	-	-	-				694
133	-	-	-				347
134	-	-	-				미적립
135	-	-	-				694
136	-	-	-	중국	'17.12.24.~'17.12.28.	-	미적립
137	-	-	-				미적립
138	-	-	-				1,111
139	-	-	-				미적립
140	-	-	-				미적립
141	-	-	-				586
142	-	-	-	미국	17.12.18.~'18.6.17.	-	12,917
143	-	-	-	미국	'18.1.18.~'18.1.25.	-	11,946
144	-	-	-	일본	'18.3.8.~'18.3.10.	-	1,516
145	-	-	-				미적립
146	-	-	-				1,516
147	-	-	-	일본	'18.3.15.~'18.3.19.	-	1,050
148	-	-	-	일본	'18.3.23.~'18.3.25.	-	1,516
149	-	-	-	미국	'18.3.23.~'18.3.27.	-	13,888
150	-	-	-				미적립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151	-	-	-	중국	'18.4.5.~'18.4.7.	-	772
152	-	-	-				966
153	-	-	-	일본	'18.4.11.~'18.4.14.	-	1,516
154	-	-	-	미국	'18.4.11.~'18.4.17.	-	10,872
155	-	-	-	프랑스, 아일랜드	'18.4.22.~'18.4.28.	-	11,278
156	-	-	-		'18.4.21.~'18.4.29.		11,205
157	-	-	-		'18.4.22.~'18.4.29.		11,359
158	-	-	-		'18.4.22.~'18.4.29.		11,278
159	-	-	-		'18.4.21.~'18.4.26.		11,205
160	-	-	-		'18.4.21.~'18.4.26.		14,098
161	-	-	-	일본	'18.4.26.~'18.4.28.	-	1,050
162		-	-				미적립
163		-	-				1,050
164		-	-				미적립
165		-	-				미적립
166		-	-				1,050
167		-	-				1,050
168	-	-	-				1,050
169	-	-	-				525
170	-	-	-	일본	'18.4.26.~'18.4.28.	-	1,050
171		-	-	일본			미적립
172		-	-	일본			1,050
173		-	-	일본			1,050
174		-	-	일본			1,050
175		-	-	일본			1,050
176	-	-	-	베트남, 중국	'18.5.9.~'18.5.16.	-	1,684
177	-	-	-	베트남	'18.5.9.~'18.5.12.		3,368
178	-	-	-	중국	'18.5.10.~'18.5.12.	-	미적립
179		-	-				778
180		-	-				미적립
181		-	-				778
182		-	-				미적립
183		-	-				778
184		-	-				미적립
185	-	-	-				미적립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186	-	-	-	일본	'18.5.14.~'18.5.'18.	-	1,516
187	-	-	-	몽골	'18.5.28.~'18.6.2.	-	2,452
188	-	-	-				2,452
189	-	-	-				2,452
190	-	-	-				3,188
191	-	-	-	제주	'18.5.31.~'18.5.31	-	552
192	-	-	-	캐나다	18.6.14.~'18.6.18.	-	미적립
193	-	-	-	미국	'18.6.15.~'18.6.'18.		1,751
194	-	-	-	캐나다	'18.6.17.~'18.6.21.		10,176
195	-	-	-	중국	'18.6.29.~'18.7.4.	-	미적립
196	-	-	-	중국			미적립
197	-	-	-	중국	'18.7.2.~'18.7.7.	-	676
198	-	-	-	중국	'18.7.4.~'18.7.8.	-	588
199	-	-	-	일본	'18.7.6.~'18.7.8.	-	1,516
200	-	-	-				1,516
201	-	-	-				1,516
202	-	-	-	일본	'18.7.9.~'18.7.12.	-	486
203	-	-	-	러시아	'18.7.17.~'18.8.17.	-	952
204	-	-	-	중국	'18.7.23.~'18.7.28.	-	미적립
205	-	-	-	중국			미적립
206	-	-	-	중국			906
207	-	-	-	일본	'18.8.7.~'18.8.10.	-	1,050
208	-	-	-	일본			1,050
209	-	-	-	중국	'18.8.8.~'18.8.11.	-	1,111
210	-	-	-	중국			954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211	-	-	-	중국	'18.8.8.~'18.8.11.	-	미적립
212	-	-	-	일본	'18.8.8.~'18.8.13.	-	미적립
213	-	-	-	중국	'18.8.13.~'18.8.17.	-	미적립
214	-	-	-				미적립
215	-	-	-				미적립
216	-	-	-	영국	'18.8.15.~'18.8.26.	-	11,304
217	-	-	-	중국	'18.8.19.~'18.8.26.	-	724
218		-	-				미적립
219	-	-	-	중국	'18.8.22.~'18.8.25.	-	772
220	-	-	-				미적립
221	-	-	-	중국	'18.8.20.~'18.8.24.	-	676
222	-	-	-				676
223	-	-	-				676
224	-	-	-				676
225	-	-	-				676
226	-	-	-				미적립
227	-	-	-	일본	'18.8.21.~'18.8.25.	-	1,539
228	-	-	-				미적립
229	-	-	-	일본	'18.8.27.~'18.9.1.	-	1,516
230	-	-	-	일본	'18.8.28.~'18.9.1.		미적립
231	-	-	-	독일	'18.9.7.~'18.9.10.	-	10,720
232	-	-	-				10,720
233	-	-	-	일본	'18.9.8.~'18.9.10.	-	1,570
234	-	-	-	일본	'18.9.7.~'18.9.10.	-	1,570
235		-	-				미적립
236	-	-	-				1,766
237	-	-	-	호주	'18.9.12.~'18.9.15.	-	9,642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238	-	-	-	중국	'18.9.17.~'18.9.19.	-	772
239		-	-		'18.9.17.~'18.9.20.		미적립
240		-	-				미적립
241	-	-	-				966
242	-	-	-	일본	'18.9.25.~'18.9.27.	-	1,516
243	-	-	-	미국	'18.9.26.~'18.10.6.	-	14,076
244	-	-	-	일본	'18.10.4.~'18.10.7.	-	1,516
245	-	-	-	중국	'18.10.12.~'18.10.15.	-	미적립
246	-	-	-	중국	'18.10.18.~'18.10.21.	-	미적립
247	-	-	-	중국	'18.10.19.~'18.10.27.	-	973
248	-	-	-	중국	'18.10.22.~'18.10.24.	-	1,050
249	-	-	-				1,050
250	-	-	-				1,050
251	-	-	-				1,050
252	-	-	-				미적립
253	-	-	-				1,312
254	-	-	-	일본	'18.10.22.~'18.10.24.	-	1,881
255	-	-	-	일본	'18.10.23.~'18.10.25.	-	486
256	-	-	-	우즈베키스탄	'18.10.30.~'18.11.3.	-	6,026
257	-	-	-				6,026
258	-	-	-	일본	'18.11.8.~'18.11.13.	-	1,516
259	-	-	-	중국	'18.11.11.~'18.11.16.	-	676
260	-	-	-	러시아	'18.11.12.~'18.11.14.	-	1,190
261	-	-	-	중국	'18.11.15.~'18.11.21.	-	미적립
262		-	-	중국			미적립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263	-	-	-	대만	'18.11.18.~'18.11.22.	-	1,828
264		-	-				1,828
265	-	-	-	중국	'18.11.18.~'18.11.24.	-	미적립
266	-	-	-				386
267	-	-	-				미적립
268		-	-				미적립
269	-	-	-				미적립
270	-	-	-	일본	'18.11.21.~'18.11.23.	-	미적립
271	-	-	-	일본	'18.11.22.~'18.11.26.	-	미적립
272	-	-	-	제주	'18.11.23.~'18.11.24.	-	552
273	-	-	-	일본	'18.11.24.~'18.11.27.	-	미적립
274	-	-	-	일본	'18.11.27.~'18.12.1.	-	486
275	-	-	-				486
276	-	-	-	미국	'18.11.28.~'18.12.4.	-	9,154
277	-	-	-				9,154
278	-	-	-				9,154
279	-	-	-	중국	'18.11.30.~'18.12.1.	-	1,093
280		-	-	중국	'18.11.29.~'18.12.3.		1,050
281	-	-	-	중국	'18.11.29.~'18.12.1.		미적립
282	-	-	-	중국	'18.11.29.~'18.12.1.		미적립
283	-	-	-	중국	'18.11.28.~'18.12.1.		1,050
284	-	-	-	중국	'18.11.28.~'18.12.1.		미적립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285	-	-	-	태국	'18.11.30.~'18.12.2.	-	4,572
286	-	-	-	일본	'18.12.5.~'18.12.8.	-	556
287	-	-	-	일본	'18.12.5.~'18.12.8.	-	556
288	-	-	-				556
289	-	-	-				556
290	-	-	-	미국	'18.12.5.~'18.12.15.	-	13,888
291	-	-	-	일본	'18.12.7.~'18.12.8.	-	556
292	-	-	-	중국	'18.12.18.~'18.12.21.	-	716
293			-				미적립
294	-	-	-	일본	'18.9.5.~'18.9.8.	-	1,516
295	-	-	-				1,516
296	-	-	-				미적립
297	-	-	-				1,516
298	-	-	-				미적립
299	-	-	-				1,516
300	-	-	-	러시아	'19.2.16.~'19.2.19.	-	952
301	-	-	-	중국	'19.2.22.~'19.2.24.	-	772
302	-	-	-	미국	'19.3.20.~'19.3.26.	-	12,428
303	-	-	-				12,428
304	-	-	-	대만	'19.3.24.~'19.3.30.	-	미적립
305	-	-	-	미국	'19.4.4.~'19.4.8.	-	10,872
306	-	-	-	중국	'19.4.13.~'19.4.18.	-	772
307		-	-				772
308		-	-				772
309		-	-				772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310	-	-	-	우즈베키스탄	'19.4.14.~'19.4.19.	-	6,026
311	-	-	-				7,532
312	-	-	-				6,026
313	-	-	-				6,026
314	-	-	-				6,026
315	-	-	-	타이완	'19.4.16.~'19.4.19.	-	1,828
316		-	-				미적립
317		-	-				1,828
318	-	-	-	일본	'19.4.17.~'19.4.20.	-	미적립
319	-	-	-				미적립
320	-	-	-				미적립
321	-	-	-				미적립
322	-	-	-	파라과이	'19.4.22.~'19.5.1.	-	17,565
323	-	-	-	미국	'19.4.28.~'19.5.3.	-	13,758
324	-	-	-				13,758
325	-	-	-	제주	'19.5.2.~'19.5.3.	-	552
326	-	-	-	중국	'19.5.7.~'19.5.10.	-	398
327	-	-	-				796
328	-	-	-	러시아, 중국	'19.5.11.~'19.5.15.	-	1,167
329	-	-	-	중국	'19.5.13.~'19.5.21.	-	906
330	-	-	-				338
331		-	-				338
332		-	-				미적립
333		-	-				미적립
334	-	-	-	일본	'19.5.14.~'19.5.17.	-	1,516
335		-	-				미적립
336	-	-	-				1,516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337	-	-	-	중국	'19.5.16.~'19.5.18.	-	249
338		-	-				미적립
339	-	-	-				미적립
340	-	-	-				미적립
341	-	-	-	몽골	'19.5.27.~'19.5.31.	-	3,066
342	-	-	-				2,452
343	-	-	-				2,452
344	-	-	-				2,452
345	-	-	-	몽골	'19.7.4.~'19.7.7.	-	미적립
346	-	-	-	몽골	'19.7.3.~'19.7.7.	-	2,452
347	-	-	-	몽골	'19.7.3.~'19.7.7.	-	미적립
348	-	-	-	제주	'19.7.8.	-	552
349	-	-	-	중국	'19.7.13.~'19.7.14.	-	1,420
350	-	-	-		'19.7.12.~'19.7.14.		1,136
351	-	-	-				1,136
352	-	-	-				568
353	-	-	-				1,136
354	-	-	-				1,136
355	-	-	-				미적립
356	-	-	-	일본	'19.7.16.~'19.7.'19.	-	1,516
357	-	-	-	중국	'19.7.'19.~'19.7.26.	-	676
358	-	-	-				미적립
359	-	-	-				676
360	-	-	-				미적립
361	-	-	-	일본	'19.7.20.~'19.7.22.	-	1,062
362	-	-	-				1,062
363	-	-	-				1,062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364	-	-	-	러시아, 중국	'19.7.22.~'19.7.28.	-	769
365	-	-	-				276
366	-	-	-	미국	'19.7.27.~'19.8.2.	-	13,888
367		-	-				13,888
368	-	-	-	중국	'19.7.30.~'19.8.2.	-	966
369	-	-	-				미적립
370	-	-	-				1,136
371	-	-	-				미적립
372	-	-	-	영국	'19.8.4.~'19.8.17.	-	11,304
373	-	-	-	독일, 폴란드, 체코	'19.8.16.~'19.8.22. '19.8.17.~'19.8.22.	-	13,677
374	-	-	-				12,836
375	-	-	-	중국	'19.8.21.~'19.8.24.	-	966
376	-	-	-	중국	'19.8.31.~'19.9.3.	-	772
377	-	-	-				772
378	-	-	-	중국	'19.9.6.~'19.9.11.	-	772
379	-	-	-	중국	'19.9.2.~'19.9.4.	-	795
380	-	-	-	중국	'19.9.4.~'19.9.9.	-	575
381	-	-	-				575
382		-	-				575
383	-	-	-	중국	'19.9.16.~'19.9.20.	-	846
384	-	-	-				676
385		-	-				미적립
386	-	-	-				676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387	-	-	-	중국	'19.9.20.~'19.9.23.	-	미적립
388	-	-	-	중국	'19.9.20.~'19.9.25.	-	미적립
389	-	-	-	중국	'19.10.22.~'19.10.24.	-	1,348
390	-	-	-				916
391	-	-	-	중국	'19.10.26.~'19.10.29.	-	1,136
392	-	-	-				미적립
393	-	-	-				1,136
394	-	-	-				568
395	-	-	-				1,136
396	-	-	-	일본	'19.10.29.~'19.11.2.	-	1,078
397	-	-	-	중국	'19.11.11.~'19.11.16.	-	714
398	-	-	-				714
399		-	-				미적립
400	-	-	-				714
401	-	-	-				714
402	-	-	-				714
403	-	-	-	미국	'19.11.20.~'19.11.26.	-	15,996
404	-	-	-				12,797
405	-	-	-				12,797
406	-	-	-				12,797
407	-	-	-	러시아	'19.11.21.~'19.11.23.	-	미적립
408	-	-	-	제주	'19.12.6.	-	미적립
409	-	-	-	중국	'19.12.7.~'19.12.9.	-	1,312
410	-	-	-				1,050
411		-	-				525

연번	소속	직위(급)	성명	출장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공적 항공마일리지
412	-	-	-	대만	'19.12.11.~'19.12.14.	-	1,828
413	-	-	-				1,554
414	-	-	-				1,828
415	-	-	-				미적립
416	-	-	-	베트남	'19.12.10.~'19.12.13.	-	4,210
417	-	-	-				2,863
418	-	-	-				2,863
419		-	-				2,863
420		-	-				1,684
421	-	-	-				2,863
422		-	-				2,863
423	-	-	-				2,863
424	-	-	-				2,863
425	-	-	-				2,863
426	-	-	-				2,863
427	-	-	-	중국	'20.1.7.~'20.1.9.	-	1,136
428	-	-	-				1,420
429	-	-	-				1,136
430	-	-	-				1,136
431	-	-	-				1,136
432	-	-	-				1,136
433	-	-	-				미적립
434	-	-	-	일본	'20.1.20.~'20.1.22. '20.1.20.~'20.1.21.	-	1,516
435	-	-	-				미적립
436	-	-	-				1,516
437	-	-	-	러시아	'20.2.17.~'20.2.21.	-	952
438	-	-	-				952
439	-	-	-				952
440	-	-	-	일본	'20.2.18.~'20.2.23.	-	미적립
441	-	-	-				미적립
합계 (총 125명, 적립 74명, 미적립 51명)							1,119,090

【붙임2】

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적 사용 현황

(단위 : 마일)

연번	소속	직위(급)	성 명	출장 국가(지역)	출장기간	출장 목적	사적 사용 마일리지	사용일
1	-	-	E	미국	'17.7.2.~ '17.7.9.	-	13,888	'19.6.22.
2	-	-	-	프랑스, 아일랜드	'18.4.21.~ '18.4.26.	-	10,000	'18.8.30.
합계							23,888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4	**월정직책급 초과 지급** ○ 「동북아역사재단 연봉제, 변동성과급 및 제수당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2조에 따르면 월정직책급의 지급 기준은 별표4(500천원 지급)와 같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 3. F에게 월정직책급을 지급하면서 자체 기준(500,000원)보다 100,000원 초과한 600,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월정직책급 초과 지급 현황”과 같이 2019. 3.부터 2020. 3.까지 위 F에게 자체 기준보다 합계 1,300,000원을 초과하여 월정직책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주의(1명) ○ 시정(회수) -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월정직책급 합계 1,30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붙임】

월정직책급 초과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자	지급월	월정직책급		
			기준액	실제 지급액	초과지급액
1	F	2019. 3.	500,000	600,000	100,000
2		2019. 4.	500,000	600,000	100,000
3		2019. 5.	500,000	600,000	100,000
4		2019. 6.	500,000	600,000	100,000
5		2019. 7.	500,000	600,000	100,000
6		2019. 8.	500,000	600,000	100,000
7		2019. 9.	500,000	600,000	100,000
8		2019. 10.	500,000	600,000	100,000
9		2019. 11.	500,000	600,000	100,000
10		2019. 12.	500,000	600,000	100,000
11		2020. 1.	500,000	600,000	100,000
12		2020. 2.	500,000	600,000	100,000
13		2020. 3.	500,000	600,000	100,000
합계			6,500,000	7,800,000	1,30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5	**정직 처분자 보수 지급** ○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3조 제1항, 제3항, 제25조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제26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임직원의 선임·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전반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사회형평적 인력활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하여 임직원의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의 위반 및 태만,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징계의 사유 및 정도, 절차 등에 관한 자체 규정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과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직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소속 직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15.12.24.개정)」 제80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감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06. 10. 4. 「동북아역사재단 인사규정」을 제정하면서 제50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제3호에 '정직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어 정직 처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2020.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규정을 운영한 사실이 있음.	○ **개선** - 정직 처분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6	**공가 사용 부적정**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제4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 제26조 제4호에 따르면 공가는 관련 법률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에 허가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 G은(는) 2017. 10. 18. 검강검진의 사유로 공가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0. 18.부터 2019. 12. 30.까지 위 G 등 6명은 건강검진을 사유로 합계 7일에 대하여 공가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공가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위 G 등 6명은 공가일 합계 7일에 대한 연가보상비 합계 593,640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주의(4명) ○ 시정(회수) - 부당하게 수령한 연가보상비 합계 593,640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 조치 하기 바람

【붙임】

공가 사용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대상자			공가일시	공가사유	공가일 건강검진 실시 여부	당해연도 건강검진일	연가 보상비 수령액
	소속	직급	성명					
1	-	-	G	2017.10.18. 09:00~18:00	건강검진	X	2017.6.23.(금)	115,630
				2019.12.30. 09:00~18:00	건강검진	X	2019.11.23.(토)	140,670
2	-	-	-	2017.12.20. 09:00~18:00	건강검진	X	2017.12.19.(화)	61,240
3	-	-	-	2018.8.13. 09:00~18:00	건강검진	X	-	65,030
4	-	-	-	2018.12.5. 09:00~18:00	건강검진	X	2018.11.26.(월)	62,830
5	-	-	-	2018.10.15. 09:00~12:00	건강검진	X	-	90,720
6	-	-	-	2018.11.21. 09:00~18:00	건강검진	X	2018.12.10.(월)	57,520
합계(6명, 7일)								593,64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7	**협상에 의한 계약업무 처리 부적정** **【평가항목 배점한도 초과 및 가격평가에 관한 사항】①** ○ 「동북아역사재단 회계규정」 제92조에 따르면 이사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계약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붙일 수 있고, 규격입찰의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제149조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의 회계에 관한 처리는 위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이행실적, 기술능력, 사업수행계획, 재무상태 및 입찰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고,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그 기준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47호, 2015. 9. 2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제안서의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는 각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①,② 관련】** **○ 경고(3명)** **【① 관련】** **○ 주의(4명)** **【② 관련】** **○ 주의(3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 12. 21. 이미지 촬영업체 선정을 위한 ○○ 등 2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기술능력 평가항목의 배점한도 30점보다 10점 초과된 40점을 평가항목으로 배점하였으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에 대해 가격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만으로 협상순서를 정하는 등【붙임1】“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 초과 및 가격평가 미실시 현황”과 같이 2018. 12. 21.부터 2020. 1. 31.까지 3차례에 걸쳐 ○○ 등 5개 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하면서 기술능력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초과하고, 2회에 걸쳐 가격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협상순서를 결정하여 ○○ 등 2개 업체와 계약(127,500천원) 한 사실이 있음. **【공고기간에 관한 사항】** …… ② ○「동북아역사재단 회계규정」제149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5항에 따르면 협상에 의한 계약은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40일 전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고,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예방 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2억원) 미만인 경우, 재공고입찰의 경우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9. 20. 유지보수 사업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면서 제안서 제출 마감일(2017.09.08.) 3일전인 2017. 9. 4. 입찰공고를 하는 등【붙임2】“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9. 4.부터 2020. 1. 23.까지 제안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에서 9일 전에 입찰공고를 하는 등 총 10회(498,795천원)에 걸쳐 입찰공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1】

제안서 평가항목 배점한도 초과 및 가격평가 미실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건명	평가항목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배점한도	동북아 역사재단 배점한도	사업 예산	제안서 제출 업체명	제안서 평가일	제안서 평가			협상 순서 (순위)	계약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계약일)
								기술평가	입찰 가격	가격 평가			
1	-	일반부문	30점	40점	35,500	○○ -	'18.12.21.	83.97(적격) 77.67(적격)	35,000 35,500	미실시	○○(1) -(2)	○○	35,000 ('18.12.31.)
2	-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30점	40점	50,000	- -	'19.03.05.	85(적격) 79.67(적격)	48,510 49,390	미실시	-(1) -(2)	-	48,000 ('19.03.13.)
3	-	사업수행능력 및 실적	30점	40점	50,000	- -	'20.01.31.	82(적격) 68.67(부적격)	49,940 49,836	협상 적격자 1개 업체	-(1) -(부적격)	-	44,500 ('20.02.07.)
합계													127,500

【붙임2】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기간 부적정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건명	입찰공고 게시일	제안서 제출마감일	공고 기간	계약업체명 (대표자)	계약일	계약 금액
1	-	2017.09.04.	2017.09.08.	3	-	2017.09.20.	58,980
2	-	2017.12.27.	2018.01.03.	6	-	2018.01.17.	53,460
3	-	2018.02.01.	2018.02.07.	5	-	2018.03.01.	74,052
4	-	2018.08.02.	2018.8.10.	7	-	2018.08.21.	22,548
5	-	2018.10.10.	2018.10.18.	7	-	2018.11.01.	31,655
6	-	2018.11.05.	2018.11.13.	7	-	2018.12.05.	37,430
7	-	2018.12.11.	2018.12.19.	7	-	2018.12.28.	93,170
8	-	2018.12.11.	2018.12.19.	7	-	2018.12.31.	35,000
9	-	2019.02.22.	2019.03.04.	9	-	2019.03.13.	48,000
10	-	2020.01.23.	2020.01.31.	7	-	2020.02.07.	44,500
합계							498,795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8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수령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보수규정」 제20조에 따르면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상근임원 및 직원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임·직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하며(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에 의하여 당해 상근임원 및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상근임원 및 직원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길 때에도 같으며, 상근임원 및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임·직원에 대하여는 1년 범위 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하며, 「동북아역사재단 연봉제, 변동성과급 및 제수당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21조에 따르면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위 운영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2017.12.27.)」 하도록 되어 있어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보수규정」 제29조에 따르면 재단의 임·직원에게 개인별로 산정된 복지포인트 범위 내에서 맞춤형 복지제도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연봉제, 변동성과급 및 제수당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31조에 따르면 복지포인트는 공통포인트, 근속포인트, 가족포인트(1포인트=천원)로 구성되며,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산정하여 부여하되, 이사장의 결재를 득한 이후에는 재산정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당해연도에는 반영하지 않고 익년도에 반영하며 “2018～2020년	○ **주의(16명)** ○ **통보** - H 등 가족수당 부적정 수령자에 대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 **시정(회수)** - 부적정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10,740천원, 맞춤형복지포인트 2,800포인트(2,800천원) 합계 13,540천원을 관련자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동북아역사재단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가족포인트는 가족수당 지급대상인 부양가족과 동일하며 직계 존·비속 포인트는 각 5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 H은(는) 2019. 6. 17.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달리하게 된 모친에 대하여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2019. 7.부터 2020. 3.까지 9개월 간 가족수당 180천원, 맞춤형복지포인트(직계 존·비속) 50포인트(50천원) 합계 230천원을 수령하는 등 【붙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수령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3.부터 2020. 3.까지 위 H 등 직원 17명은 부양가족 변동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 10,740천원, 맞춤형복지포인트 2,800포인트(2,800천원) 등 합계 13,540천원을 수령한 사실이 있음.	

【붙임】

가족수당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수령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소속	직급	성명	부양가족현황		수령 부적정 내역				소계	변동일(사유)
						가족수당		맞춤형복지포인트			
				대상자	관계	기간	금액	기간	금액		
1	-	-	H	-	-	'19.7.～'20.3.(9개월)	180,000	'20년(1회)	50,000	230,000	'19.6.17.(세대분리)
2	-	-	-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7.7.10.(세대분리)
3	-	-	-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7.11.21.(세대분리)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4	-	-	-	-	-	'18.2.～'20.3.(26개월)	520,000	'19～'20년(2회)	100,000	620,000	'18.2.(신청)
				-	-	'18.2.～'20.3.(26개월)	520,000	'19～'20년(2회)	100,000	620,000	
5	-	-	-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7.4.(신청)
6	-	-	-	-	-	'20.1.～'20.3.(3개월)	60,000	'20년(1회)	50,000	110,000	'19.12.6.(세대분리)
				-	-	'20.1.～'20.3.(3개월)	60,000	'20년(1회)	50,000	110,000	
7	-	-	-	-	-	'18.2.～'20.3.(26개월)	520,000	'19～'20년(2회)	100,000	620,000	'18.2.(신청)
8	-	-	-	-	-	'18.12.～'20.3.(16개월)	320,000	'19～'20년(2회)	100,000	420,000	'18.12.(신청)
				-	-	'18.12.～'20.3.(16개월)	320,000	'19～'20년(2회)	100,000	420,000	
9	-	-	-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5.3.18.(세대분리)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0	-	-	-	-	-	'19.10.～'20.3.(6개월)	120,000	'20년(1회)	50,000	170,000	'19.10.(신청)
11	-	-	-	-	-	'18.4.～'20.3.(24개월)	480,000	'19～'20년(2회)	100,000	580,000	'18.4.(신청)
				-	-	'18.4.～'20.3.(24개월)	480,000	'19～'20년(2회)	100,000	580,000	
12	-	-	-	-	-	'19.5.～'20.3.(11개월)	220,000	'20년(1회)	50,000	270,000	'19.4.2.(세대분리)
				-	-	'19.5.～'20.3.(11개월)	220,000	'20년(1회)	50,000	270,000	
13	-	-	-	-	-	'18.3.～'20.3.(25개월)	500,000	'19～'20년(2회)	100,000	600,000	'18.2.22.(세대분리)
				-	-	'18.3.～'20.3.(25개월)	500,000	'19～'20년(2회)	100,000	600,000	
14	-	-	-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8.1.(세대분리)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5	-	-	-	-	-	'20.1.～'20.3.(3개월)	60,000	'20년(1회)	50,000	110,000	'20.1.(신청)
				-	-	'20.1.～'20.3.(3개월)	60,000	'20년(1회)	50,000	110,000	
16	-	-	-	-	-	'18.1.～'20.3.(27개월)	540,000	'18～'20년(3회)	150,000	690,000	'18.1.(세대분리)
17	-	-	-	-	-	'17.3.～'20.3.(37개월)	740,000	'18～'20년(3회)	150,000	890,000	'16.1.14.(사망, 지급사유 소멸)
합계							10,740,000		2,800,000	13,540,0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9	**자산관리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자산관리지침」 제5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자산의 적정한 관리와 보관 책임을 위해 관리책임자(부서장)와 보관책임자(사용자)를 지정하고, 운영기획실장은 년 1회 이상 전 자산에 대하여 재물조사를 실시하며, 각 부서 관리책임자는 재물조사보고서를 운영기획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제12조에 따르면 자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망실한 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하며, 망실품의 변상액은 그 자산의 미상각 잔액으로 하고, 변상책임자는 변상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상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2. 1. 27. 2012년도 취득 자산 119건(금액 94,433,340원)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붙임1】 "동북아역사재단 연도별 자산 취득 현황(총괄)"과 같이 총 1,389건 취득금액 819,859,663원의 자산에 대해 2012년부터 2020. 4. 감사일 현재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 특히, 재물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자산관리를 소홀히 하여 2015. 9. 25. ○에서 취득한 자산 1점을 2020.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지 않는 등【붙임2】 "동북아역사재단 자산 망실 현황"과 같이 총 자산 9점 취득금액 12,630,120원 상당의 자산을 2020년 4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관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경고(10명)** ○ **통보** -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손·망실 및 불용 자산을 파악하고, 분실된 컴퓨터 9대(12,630천원)에 대해서는 분실 원인을 파악하여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 바람

【붙임1】

동북아역사재단 연도별 자산 취득 현황(총괄)

(제14기 2019년 결산보고서 기준)

(단위 : 원)

연번	취득연도	자산 내역	수량(건)	취득금액
1	2012	-	119	94,433,340
2	2013	-	100	80,987,080
3	2014	-	193	145,614,030
4	2015	-	233	124,519,990
5	2016	-	362	90,997,050
6	2017	-	95	121,063,380
7	2018	-	230	92,462,193
8	2019	-	57	69,782,600
합계			1,389	819,859,663

【붙임2】

동북아역사재단 자산 망실 현황

(단위 : 원)

연번	사용 부서	품명	구입일	취득가액	수량	금액	규격 (결산보고서 연번)
1	○	-	2015.09.25.	1,100,000	1	1,100,000	-
2	-	-	2015.12.18.	1,430,000	1	1,430,000	-
3	-	-	2016.01.25.	1,577,630	3	4,732,890	-
4	-	-	2017.09.07.	1,347,230	1	1,347,230	-
5	-	-	2017.11.27.	1,340,000	3	4,020,000	-
합계					9	12,630,12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0	**선금 지급에 따른 채권확보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회계규정」 제50조 및 제149조에 따르면 지출담당자는 그 성질상 선금을 지급 할 수 있고, 동북아역사재단의 회계에 관한 처리는 위 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공공계약 실무가이드(감사원)"에 따르면 국가계약은 기획재정부가 관장하는 국가계약법령과 계약예규가 적용되고 중앙행정기관 등 국가기관(직접 적용)과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등 공공기관(준용)이 적용을 받고,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8호, 2016. 12. 30.)」 제1조에 따르면 공사 등의 입찰·계약의 집행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제35조에 따르면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증권 또는 보증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금액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 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경고(5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12. 15. 용역 계약을 □□와(과) 체결하고 2017. 12. 19. 선금 4,800천원을 지급하면서 보증서 등 채권을 확보하지 않는 등【붙임】“선금 지급 채권확보 부적정 현황”과 같이 2017. 12. 19.부터 2019. 10. 14.까지 총 9회에 걸쳐 선금 합계 362,670천원을 지급하면서 채권을 미확보(6건) 하거나 채권 확보 요건(3건)에 맞지 않게(보증보험증권 가입부족 기간이 최소 15일에서 최대 304일, 보증보험증권 가입부족 금액이 최소 490천원에서 최대 10,066천원) 채권을 확보한 사실이 있음.	

【붙임】

선금 지급 채권확보 부적정 현황

(단위 : 일, 천원)

연번	계약건명	계약일	계약업체명 (대표자)	계약 금액	계약기간	선금 지급일	선금 지급액	채권확보 여부 및 내역			
								확보 여부	가입 기간		가입 금액	
									확보된 보증보험 증권 가입 기간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기간	확보된 보증보험증권 가입 금액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금액 (약정이자율)
1	-	'17.12.15.	□□	16,000	'17.12.15.~ '18.02.28.	'17.12.19.	4,800	미확보				
2	-	'18.02.14.	-	46,500	'18.02.14.~ '18.04.30.	'18.02.23.	23,250	미확보				
3	-	'18.06.14.	-	179,300	'18.06.14.~ '19.09.30.	'18.06.29.	125,510	확보	'18.06.21.~ '19.01.29.(223일간)	'18.06.21.~ '19.11.29.(527일간)	128,309	132,215 (3.7%)
4	-	'18.08.16.	-	15,300	'18.08.16.~ '18.11.30.	'18.08.29.	10,710	미확보				
5	-	'18.10.10.	-	146,410	'18.10.10.~ '18.11.16.	'18.10.18.	73,205	확보	'18.10.12.~ '18.11.16.(36일간)	'18.10.12.~ '18.12.15.(66일간)	73,205	73,695 (3.7%)
6	-	'18.11.06.	-	61,050	'18.11.06.~ '19.02.10.	'18.11.23.	42,735	미확보				
7	-	'18.12.28.	-	93,170	'18.12.28.~ '19.04.15.	'19.02.12.	46,860	확보	'19.02.01.~ '19.05.30.(119일간)	'19.02.01.~ '19.06.14.(134일간)	37,434	47,500 (3.72%)
8	-	'19.06.25.	-	59,200	'19.06.25.~ '19.10.30.	'19.07.26.	29,600	미확보				
9	-	'19.10.04.	-	12,000	'19.10.04.~ '19.10.22.	'19.10.14.	6,000	미확보				
합계							362,67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1	**경조사비 집행 부적정**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경조사비 집행지침」 제2조에 따르면 경조사의 범위는 재단 직원 및 직원의 배우자와 관련되는 결혼, 출산, 돌, 사망(단,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련 사항은 제외), 업무수행과 관련된 유관기관의 행사 및 유관기관 관계자의 경조사, 기타 이사장이 재단 운영상 축하 또는 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조사(단, 이사장 개인의 경조사는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1. 4.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I에게 지급사유 미상의 사유로 화환(구입금액 50,000원)을 구입하여 지급하는 등 【붙임】 "경조사비 부적정 집행 현황"과 같이 2017. 1월부터 2020. 1월까지 총 27회에 걸쳐 동북아역사재단 운영과 업무 연관성을 입증할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채 경조사비 합계 2,327,100원을 집행한 사실이 있음.	○ **경고(2명)** ○ **통보** -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이 집행한 경조사비 합계 2,327,100원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업무연관성이 입증되지 않는 금액은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하기 바람

【붙임】

경조사비 지급 부적정 현황

(단위 : 원)

연번	일자	지급명의	지급종류	금액	소속	직급	성명	지급사유(목적 등)
1	2017.01.04	-	화환	100,000	-	-	I	.
2	2017.01.11	-	화환	100,000	-	-	-	.
3	2017.01.31	-	화환	100,000	-	-	-	.
4	2017.02.22	-	화환	100,000	-	-	-	.
5	2017.03.06	-	화환	100,000	-	-	-	.
6	2017.03.06	-	화환	100,000	-	-	-	.
7	2017.03.06	-	화환	100,000	-	-	-	.
8	2017.03.06	-	화환	100,000	-	-	-	.
9	2017.03.13	-	화환	100,000	-	-	-	.
10	2017.03.13	-	화환	100,000	-	-	-	.
11	2017.03.14	-	화환	100,000	-	-	-	.
12	2017.04.12	-	화환	100,000	-	-	-	.
13	2017.04.21	-	화환	100,000	-	-	-	-
14	2017.05.08	-	현금 (화환 포함)	127,100	-	-	-	-
15	2017.05.08	-	화환	100,000	-	-	-	-
16	2017.06.30	-	화환	100,000	-	-	-	-
17	2017.07.20	-	화환	100,000	-	-	-	.
18	2018.05.11	-	서양란	100,000	-	-	-	-
19	2018.07.02	-	서양란	100,000	-	-	-	-
20	2019.02.08	-	현금	50,000	-	-	-	-
21	2019.08.26	-	서양란	50,000	-	-	-	-
22	2019.08.27	-	서양란	50,000	-	-	-	-
23	2019.10.20	-	현금	50,000	-	-	-	-
24	2019.11.12	-	현금	50,000	-	-	-	-
25	2019.12.27	-	현금	50,000	-	-	-	-
26	2019.12.27	-	현금	50,000	-	-	-	-
27	2020.01.17	-	서양란	50,000	-	-	-	-
합계				2,327,1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2	**특근매식비 지급 부적정**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2017~2020)」 Ⅲ. 비목별 지침(운영비)에 따르면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이고, 지급단가는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3. 12. 26. '특근매식비 신청 관련 협조요청' 내부문서에 2014. 1. 1.부터 특근매식 단가는 7,000원으로 지급한다고 임의로 정하여, 2014. 1.부터 2020. 2.까지 특근매식비 단가를 7,000원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 나아가, 2017. 1. □ 특근매식비 1,163,100원을 지급하면서 임원 및 간부직원 5명이 실제 정규근무시간	○ **경고(17명)** ○ **통보(2건)** - 특근매식비 단가, 지급대상자 및 지급방법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실제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한 특근매식비 합계 70,294,000원에 대해 실제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금액은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각 15회로 임의로 정하여 총 75회에 해당하는 특근매식비 합계 525,000원을 지급하는 등【붙임】“특근매식비 임의 지급 현황”과 같이 2017. 1.부터 2020. 2.까지 각 부서의 특근매식비를 지급하면서 팀장급 이상 직원 및 임원에 대해서는 실제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매월 각 15회 등으로 임의로 정하여 총 10,042회에 해당하는 특근매식비 합계 70,294,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

특근매식비 임의 지급 현황

(단위 : 횟수, 원)

연도	부서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7	□	임원 및 간부직원(총3~5명)	75	75	75	75	75	75	75	75	45	39	60	60	804
		직원	92	90	112	84	84	73	91	83	33	60	57	92	951
		계(횟수)	167	165	187	159	159	148	166	158	78	99	117	152	1,755
		지급금액(원)	1,163,100	1,155,000	1,308,400	1,105,100	1,112,600	1,011,300	1,145,500	1,103,400	545,500	766,500	819,000	1,063,500	12,298,900
	-	간부직원(총3명)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540
		직원	29	75	61	43	20	37	12	1	7	9	6	10	310
		계(횟수)	74	120	106	88	65	82	57	46	52	54	51	55	850
		지급금액	518,000	804,900	711,600	600,500	454,800	573,500	398,500	322,000	364,000	112,000	167,500	311,500	5,338,800
	-	간부직원(총1~3명)	45	45	45	45	45	45	45	45	45	15	15	15	450
		직원	52	53	61	53	61	68	41	41	43	38	39	25	575
		계(횟수)	97	98	106	98	106	113	86	86	88	53	54	40	1,025
		지급금액	679,000	504,500	703,000	653,500	734,000	750,500	598,000	602,000	616,000	371,000	351,000	279,500	6,842,000
	-	간부직원(총1~3명)	45	45	45	45	45	45	45	45	45	20	15	10	450
		직원	25	31	38	53	39	40	33	20	16	23	24	22	364
		계(횟수)	70	76	83	98	84	85	78	65	61	43	39	32	814
		지급금액	490,000	532,000	580,700	623,000	588,000	595,000	546,000	455,000	427,000	301,000	273,000	224,000	5,634,700
	-	간부직원(총2~4명)	60	60	60	60	60	60	45	30	30	45	45	45	600
		직원	17	22	46	49	44	48	41	60	43	25	36	25	456
		계(횟수)	77	82	106	109	104	108	86	90	73	70	81	70	1,056
		지급금액	528,500	564,500	735,000	725,500	716,500	754,500	598,500	608,700	500,400	533,600	542,900	483,000	7,291,600
	-	간부직원(총2~4명)	48	45	39	45	36	39	39	-	36	20	30	30	407
		직원	12	7	10	10	12	22	13	33	16	35	32	16	218
		계(횟수)	60	52	49	55	48	61	52	33	52	55	62	46	625
		지급금액	413,400	360,000	324,600	361,800	319,500	392,500	327,900	231,000	353,000	342,000	421,000	296,000	4,142,700
	-	간부직원(총1명)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5	10	175
		직원	13	12	9	19	14	14	32	32	19	28	24	12	228
		계(횟수)	28	27	24	34	29	29	47	47	34	43	39	22	403
		지급금액	196,000	95,500	102,000	237,000	203,000	203,000	329,000	329,000	238,000	301,000	273,000	154,000	2,660,500
	2017년 소계		3,988,000	4,016,400	4,465,300	4,306,400	4,128,400	4,280,300	3,943,400	3,651,100	3,043,900	2,727,100	2,847,400	2,811,500	44,209,200

연도	부서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18	-	간부직원(총1명)	15	15	15	15	15	15	15	15					120
		직원	81	82	99	81	97	88	97	98					723
		계(횟수)	96	97	114	96	112	103	112	113					843
		지급금액	672,000	679,000	797,000	672,000	784,000	721,000	784,000	704,000					5,813,000
	-	간부직원(총4명)	36	60	60	60	60	60	60	60					456
		직원	21	25	26	31	36	26	35	37					237
		계(횟수)	57	85	86	91	96	86	95	97					693
		지급금액	399,000	595,000	602,000	636,600	671,500	602,000	665,000	679,000					4,850,100
	-	간부직원(총2명)	30	30	30	30	30	30	30	30					240
		직원	49	36	65	57	75	47	46	49					424
		계(횟수)	79	66	95	87	105	77	76	79					664
		지급금액	552,500	460,000	658,200	608,900	731,000	530,000	528,500	545,500					4,614,600
	-	간부직원(총3명)	45	45	45	45	45	45	45	45					360
		직원	19	51	27	16	15	7	16	4					155
		계(횟수)	64	96	72	61	60	52	61	49					515
		지급금액	362,000	672,000	504,000	427,000	420,000	364,000	427,000	343,000					3,519,000
	-	간부직원(총3명)	45	45	45	45	45	45	45	45					360
		직원	20	41	32	9	12	2	4	14					134
		계(횟수)	65	86	77	54	57	47	49	59					494
		지급금액	454,500	596,700	537,300	370,000	396,700	313,000	292,000	386,000					3,346,200
	-	임원 및 간부직원(총4~5명)	75	75	75	75	75	60	60	60					555
		직원	41	39	32	36	27	23	9	7					214
		계(횟수)	116	114	107	111	102	83	69	67					769
		지급금액	812,000	798,000	749,000	574,000	606,100	459,000	483,000	460,000					4,941,100
	-	간부직원(총8명)									120	120	120	120	480
		직원									167	217	118	165	667
		계(횟수)	-	-	-	-	-	-	-	-	287	337	238	285	1,147
		지급금액									2,000,000	2,356,800	1,657,400	1,994,100	8,008,300
	-	간부직원(총3명)									45	45	45	45	180
		직원									10	14	17	16	57
		계(횟수)	-	-	-	-	-	-	-	-	55	59	62	61	237
		지급금액									385,000	392,500	427,300	396,600	1,601,400
	-	임원 및 간부직원(총5~6명)									75	70	90	90	325

연도	부서명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직원									15	31	23	11	80
		계(횟수)	-	-	-	-	-	-	-	-	90	101	113	101	405
		지급금액									431,500	706,500	791,000	668,500	2,597,500
	소계		3,252,000	3,800,700	3,847,500	3,288,500	3,609,300	2,989,000	3,179,500	3,117,500	2,816,500	3,455,800	2,875,700	3,059,200	39,291,200
2019	-	간부직원(총8명)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20	1,440
		직원	215	215	229	217	220	189	265	273	261	327	312	204	2,927
		계(횟수)	335	335	349	337	340	309	385	393	381	447	432	324	4,367
		지급금액	2,344,620	2,176,650	2,440,020	2,357,020	2,350,740	2,160,300	2,683,700	2,719,000	2,661,700	3,128,400	3,023,600	2,267,100	30,312,850
	-	간부직원(총3명)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45	540
		직원	21	18	30	13	14	14	14	12	10	21	29	11	207
		계(횟수)	66	63	75	58	59	59	59	57	55	66	74	56	747
		지급금액	437,700	426,300	513,900	395,000	396,200	393,000	382,000	339,300	344,400	456,500	499,900	389,000	4,973,200
	-	임원 및 간부직원(총6명)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90	1,080
		직원	10	19	20	18	13	22	13	8	17	31	17	29	217
		계(횟수)	100	109	110	108	103	112	103	98	107	121	107	119	1,297
		지급금액	609,000	763,000	770,000	756,000	721,000	784,000	719,500	685,500	749,000	847,000	749,000	773,000	8,926,000
	소계		3,391,320	3,365,950	3,723,920	3,508,020	3,467,940	3,337,300	3,785,200	3,743,800	3,755,100	4,431,900	4,272,500	3,429,100	44,212,050
2020	-	간부직원(총7명)	105	105											210
		직원	264	261											525
		계(횟수)	369	366	-	-	-	-	-	-	-	-	-	-	735
		지급금액	2,579,900	2,561,650											5,141,550
	-	간부직원(총3명)	45	45											90
		직원	1	9											10
		계(횟수)	46	54	-	-	-	-	-	-	-	-	-	-	100
		지급금액	304,000	358,000											662,000
	-	임원 및 간부직원(총6명)	90	90											180
		직원	46	36											82
		계(횟수)	136	126	-	-	-	-	-	-	-	-	-	-	262
		지급금액	648,000	842,000											1,490,000
	소계		3,531,900	3,761,650	-	-	-	-	-	-	-	-	-	-	7,293,550
	임원 및 간부직원 지급금액 합계(10,042회)														70,294,000
합계															136,005,5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3	**국외파견직원 선발 부당** ○ 「동북아역사재단 직원 국외파견근무 업무규칙」 제3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국외파견 직원의 선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외파견직원선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위원회는 사무총장이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각 처·소·연수원장, 국제표기명칭대사로 하며, 위원회는 국외파견 직원으로 추천된 자에 대한 선발요건의 구비 여부, 파견의 적격 여부, 파견대상 국가 및 기관의 적합 여부 심사 및 국외파견 직원 선발 건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회는 추천된 직원들에 대한 심의 결과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에게 그 선발을 건의하고, 이사장은 위원회에서 선발을 건의한 직원 중 적임자를 국외파견 직원으로 선정하며, 파견대상 국가는 일본과 중국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국가를 파견국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집행지침(2017 기획재정부)」 Ⅲ. 비목별 지침(여비)에 따르면 국외여비 소요가 증가함에 따른 불요·불급한 출장 최소화 등 외화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집행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공무국외여행 업무지침」 제4조 및 제5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지2]의 「공무 국외	○ **통보(문책,1명)** ○ **경고(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여행 심사표」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세부사항은 [별지3]의 심사기준에 따라 여행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 J은(는) '2017년도 국외파견직원 선발위원회(위원장 J)'를 개최(1차 4.28. 2차 5.15. 3차 6.15.)하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원자 9명 중 추천후보자 총 5명(중국 : 1순위 K, 2순위 L, 일본 : 1순위 M, 2순위 N, 미국 : 1순위 O)을 이사장에게 추천하였고, P이(가) 2017. 6. 22. 추천후보자 중 L(중국), O(미국) 등 2명을 국외파견 대상자로 최종 선정하였음에도 위 P이(가) 2017. 9. 1. 퇴직하자, 위 J은(는) 별다른 사유가 없음에도 미국(대상자 O)으로 파견을 보내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국외파견직원 선발위원회'를 다시 개최(4차 9.4. 5차 12.21.)하여 2017. 12. 21. 위 O(미국)의 파견선정을 취소하고 파견지를 미국에서 일본으로 변경하여 당초 일본 추천후보자(일본 : 1순위 M, 2순위 N)를 Q(2017.11.6.취임)에게 추천하여 2017. 12. 22. 위 M을 최종파견자로 선정한 사실이 있으며, · 위 파견 선발과정에서, 위 O이(가) 이의를 제기하자 위 J와(과) Q은(는) 2017. 12. 15. 공무국외여행 심사 등 적정한 절차도 없이 '동아시아 역사문제의 기원 관련 미국 현지조사'를 사유로 2017. 12. 18.부터 2018. 6. 17.까지 6개월간 미국으로 출장을 허가하였고, 이에 대한 출장비 27,532,970원을 위 O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4	**예산 전용 부적정**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회계규정」 제16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예산이 성립된 후에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및 집행절차는 본예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이사장은 예산집행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총칙에 따라 전용할 수 있고, 「동북아역사재단 예산서(2017~2019)」 예산총칙 제2조에 따르면 사업목표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일 항 내에서 사업별, 과목별로 상호 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 4. 11. ‘ㄱ’ 세부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ㄴ’ 신규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위 세부사업의 여비 25,000천원을 용역비로 전용하는 등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총 63회에 걸쳐 합계 2,004,496천원을 임의 전용한 사실이 있음.	○ **기관경고** ○ **통보** - 예산 성립 이후 사업계획 변경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바람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5	**공무국외여행 관리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공무국외여행업무지침('16.4.30.)」 제5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인 공무국외여행에 대하여 [별지 2]의 공무 국외여행 심사표에 따라 여행의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여행시기의 적시성, 여행경비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며, [별지 3]의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에 따르면 시찰·견학·현장체험 등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시찰 및 단순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국외여비지급규칙('16.4.25.)」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이사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않을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17조에 따르면 운임의 지불을 요하지 않는 운송 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고, 「동북아역사재단 공무국외여행 규칙('18.9.14. 제정)」 제4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국외 출장을 허가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여행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을 심사하여야 하며, 제18조에 따르면 식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수로와 항공 운임 또는 실비 정산하는 숙박비에 식사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식비는 지급하지 않으며,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여행지에서 임차 등의 방식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①관련】 ○ **기관경고** 【②관련】 ○ **주의(2명)** ○ **시정(회수)** - 감액지급 하지 않고 지급한 여비 합계 1,709,670원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여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공무국외여행 심사에 관한 사항】 ----------①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1. 23.부터 2017. 1. 25.까지 'ㄷ' 관련 P 등 3명의 일본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허가하는 등 【붙임1】 "공무국외여행 미심사 현황"과 같이 2016. 7.부터 2018. 10.까지 위 일본 공무국외여행 등 총 135건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해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사없이 허가한 사실이 있음. **【공무국외여행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 ----------②**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12. 24.부터 12. 28.까지 실시한 공무국외여행의 출장여비를 지급하면서 숙박비에 조식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하였음에도 여비(식비, 일비) 합계 560,590원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는 등 【붙임2】 "공무국외여행 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과 같이 공무국외여행 7건, 22명(여비 합계 6,824,208원)의 여비를 지급하면서 숙박비에 조식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현지에서 차량을 임차(지원)하였음에도 여비(식비, 일비) 합계 1,709,670원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1】

공무국외여행 미심사 현황

연번	시작일	종료일	출장국가	출장인원	출장(연수)목적
1	2017.01.23	2017.01.25	일본	3	-
2	2017.02.07	2017.02.12	일본	1	-
3	2017.02.13	2017.02.15	중국	2	-
4	2017.02.16	2017.2.19	일본	2	-
5	2017.02.21	2017.2.24	일본	1	-
6	2017.02.21	2017.2.24	일본	2	-
7	2017.02.22	2017.03.02	미국	13	-
8	2017.02.22	2017.02.28	홍콩	5	-
9	2017.03.07	2017.03.10	일본	5	-
10	2017.03.15 2017.03.17	2017.03.22	캐나다	12	-
11	2017.03.24	2017.3.27	일본	1	-
12	2017.04.01	2017.04.08	스페인	5	-
13	2017.04.02	2017.04.08	미국	1	-
14	2017.04.04 2017.04.06	2017.04.14 2017.04.10	미국	3	-
15	2017.04.07	2017.04.15	중국	3	-
16	2017.04.11	2017.04.14	중국	3	-
17	2017.04.18	2017.04.21	중국	1	-
18	2017.04.21 2017.04.22	2017.04.30 2017.04.28	모나코	2	-
19	2017.04.22	2017.04.26	러시아	4	-
20	2017.04.23	2017.04.26	북경	2	-
21	2017.04.23 2017.04.24	2017.04.27	일본	2	-
22	2017.05.02	2017.05.06	태국	1	-
23	2017.05.03	2017.05.08	베트남	15	-
24	2017.05.23	2017.05.28	일본	6	-
25	2017.05.25	2017.05.28 2017.05.30	중국	20	-
26	2017.06.02	2017.06.06	일본	1	-
27	2017.06.11	2017.06.18	중국	1	-
28	2017.06.21	2017.06.25	미국	9	-
29	2017.06.23	2017.06.30	독일	4	-
30	2017.06.27	2017.07.06	네덜란드	1	-
31	2017.07.02	2017.07.09	미국	1	-
32	2017.07.03	2017.07.06	중국	21	-
33	2017.07.05	2017.07.07	일본	1	-
34	2017.07.07	2017.07.14	일본	1	-
35	2017.07.09	2017.07.13	중국	2	-

연번	시작일	종료일	출장국가	출장인원	출장(연수)목적
36	2017.07.10	2017.07.15	일본	3	-
37	2017.07.14	2017.07.21	중국	5	-
38	2017.07.24	2017.07.28 2017.07.26	일본	2	-
39	2017.07.26	2017.07.31	중국	9	-
40	2017.07.26	2017.08.03	미국	1	-
41	2017.07.26	2017.08.22	러시아	6	-
42	2017.07.31	2017.08.04	중국	20	-
43	2017.08.01	2017.08.04	일본	5	-
44	2017.08.08	2017.08.11	중국	5	-
45	2017.08.08	2017.08.13	중국	1	-
46	2017.08.11	2017.08.14	일본	1	-
47	2017.08.22	2017.08.29	중국	5	-
48	2017.08.25	2017.08.29	중국	1	-
49	2017.08.26	2017.09.01	중국	1	-
50	2017.08.27	2017.09.02	중국	2	-
51	2017.09.03	2017.09.13	미국	2	-
52	2017.09.07	2017.09.11	중국	7	-
53	2017.09.07	2017.09.12	독일	2	-
54	2017.09.21	2017.09.23	중국	1	-
55	2017.09.21	2017.09.24	대만	1	-
56	2017.09.24	2017.09.30	우즈베 키스탄	1	-
57	2017.09.24	2017.09.30	우즈베 키스탄	1	-
58	2017.09.25	2017.09.29	중국	3	-
59	2017.09.26	2017.10.02	미국	1	-
60	2017.10.02 2017.10.12	2017.10.05 2017.10.14	일본	1	-
61	2017.10.06	2017.10.09	일본	4	-
62	2017.10.10	2017.10.15	미국	1	-
63	2017.10.12	2017.10.18	러시아	1	-
64	2017.10.15	2017.10.26	모나코,독일	2	-
65	2017.10.21	2017.10.26	독일	2	
66	2017.10.16	2017.10.22	중국	1	-
67	2017.10.18	2017.10.25	중국	1	-
68	2017.10.23	2017.10.25	홍콩	1	-
69	2017.10.25	2017.10.30	미국	1	-
70	2017.10.25	2017.11.01	중국	1	-
71	2017.10.26	2017.10.27 2017.10.30	중국	4	-
72	2017.10.29	2017.11.02	중국	4	-
73	2017.10.29	2017.11.05	러시아	4	-
74	2017.10.30	2017.11.01	대만	1	-

연번	시작일	종료일	출장국가	출장인원	출장(연수)목적
75	2017.11.02	2017.11.05	대만	2	-
76	2017.11.06	2017.11.10	러시아	9	-
77	2017.11.11	2017.11.17	폴란드	6	-
78	2017.11.12	2017.11.19	칠레, 미국	1	-
79	2017.11.12	2017.11.19	영국	1	-
80	2017.11.17	2017.11.21	일본	2	-
81	2017.11.22	2017.11.25	러시아	2	-
82	2017.11.24	2017.11.26	일본	1	-
83	2017.11.30	2017.12.03	홍콩	1	-
84	2017.12.07	2017.12.09	일본	8	-
85	2017.12.20	2017.12.23	일본	9	-
86	2017.12.24	2017.12.28	중국	6	-
87	2017.12.18	2018.06.17	미국	1	-
88	2018.01.18	2018.01.25 2018.01.22	미국	2	-
89	2018.03.08	2018.03.10	일본	3	-
90	2018.03.15	2018.03.19	중국	1	-
91	2018.03.22 2018.03.23	2018.03.24 2018.03.25	일본	3	-
92	2018.03.23	2018.03.27	미국	4	-
93	2018.04.05	2018.04.07	중국	3	-
94	2018.04.11	2018.04.14	일본	1	-
95	2018.04.11	2018.04.17	미국	1	-
96	2018.04.20	2018.04.29	프랑스 아일랜드	10	-
97	2018.04.26	2018.04.28	일본	17	-
98	2018.05.09	2018.05.12 2018.05.13 2018.05.16	베트남 중국	3	-
99	2018.05.10	2018.05.12	중국	10	-
100	2018.05.14	2018.05.18	일본	1	-
101	2018.05.21	2018.05.25	미국	1	-
102	2018.05.28	2018.06.02	몽골	5	-
103	2018.06.14	2018.06.18	캐나다	1	-
104	2018.06.15	2018.06.18	미국	1	-
105	2018.06.17	2018.06.21	캐나다	1	-
106	2018.06.29	2018.07.04	중국	3	-
107	2018.07.02	2018.07.07	중국	4	-
108	2018.07.04	2018.07.08	중국	1	-
109	2018.07.06	2018.07.08	일본	13	-
110	2018.07.09	2018.07.12	일본	1	-
111	2018.07.17	2018.08.17	러시아	6	-
112	2018.07.23	2018.07.28	중국	5	-
113	2018.08.07	2018.08.10	일본	19	-

연번	시작일	종료일	출장국가	출장인원	출장(연수)목적
114	2018.08.08	2018.08.11	중국	27	-
115	2018.08.08	2018.08.13	일본	2	-
116	2018.08.13	2018.08.17	중국	5	-
117	2018.08.15	2018.08.26	영국	1	-
118	2018.08.19	2018.08.26	중국	4	-
119	2018.08.22	2018.08.25	중국	2	-
120	2018.08.20	2018.08.24	중국	7	-
121	2018.08.21	2018.08.25	일본	3	-
122	2018.08.27 2018.08.28	2018.08.31 2018.09.01	일본	4	-
123	2018.09.06	2018.09.10	미국	1	-
124	2018.09.07	2018.09.10	독일	2	-
125	2018.09.07 2018.09.08	2018.09.10	일본	4	-
126	2018.09.12	2018.09.15	호주	1	-
127	2018.09.17	2018.09.19 2018.09.20	중국	4	-
128	2018.09.25	2018.09.27	일본	6	-
129	2018.09.26	2018.10.06	미국	1	-
130	2018.10.04	2018.10.07	일본	2	-
131	2018.10.12	2018.10.15	중국	1	-
132	2018.10.18	2018.10.21	중국	1	-
133	2018.10.19	2018.10.27	중국	1	-
134	2018.10.22	2018.10.24	중국	11	-
135	2016.07.27	2016.07.28	폴란드	1	-

【붙임2】

공무국외여행 여비 부적정 지급 현황

(금액단위 : 원, 환율 : 1$≒1,105~1,170원)

연번	직위(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지	출장기간	지급 여비 (A)	규정상 여비 (단위:달러)(B)	초과 지급 여비 (A-B)
1	-	-	-	중국	2017.12.24.~ 2017.12.28	331,740	150	165,860
	-	-				193,510	88	96,190
	-	-				165,870	75	82,930
	-	-				143,750	65	71,870
	-	-				143,750	65	71,870
	-	-				143,750	65	71,870
	소계					1,122,370	508	560,590
2	-	-	-	폴란드	2016.07.24.~ 2016.07.28	938,239	776	39,380
3	-	-	-	캐나다	2017.03.17.~ 2017.03.22	1,373,309	814	422,730
4	-	-	-	일본	2017.04.24.~ 2017.04.27	515,640	417	31,350
5	-	-	-	러시아	2017.04.22.~ 2017.04.26	428,390	350	22,770
6	-	-	-	일본	2017.12.20.~ 2017.12.23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	-				115,240	52	57,610
	소계					921,920	416	460,880
7	-	-	-	중국	2018.09.17.~ 2018.09.19	557,440	426	68,800
	-	-				322,300	251	34,390
	-	-				322,300	251	34,390
	-	-				322,300	251	34,390
	소계					1,524,340	1,179	171,970
합계						**6,824,208**	**4,460**	**1,709,67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6	**국외(시민)단체 부당 지원 등** ○ 「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 규칙」 제5조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국내외 시민단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공고한 공모에 참여하여야 하되, “동해·독도와 역사 현안 대응 등을 위해 긴급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민단체 사업” 또는 “원활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보안유지가 필요한 시민단체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생략하고 수시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에 따르면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단체는 정관에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사항을 목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거나 재단의 목적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경험이 있는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라는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시민단체가 해외에 소재한 경우, 신규 지원 신청 단체에 한하여 재단이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위 사항 등을 확인한 단체이어야 하며, 제7조에 따르면 사업비를 지원받는 시민단체는 동북아역사재단이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재단과 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지원금 관련 단체 발행 영수증, 약정이행보증금 지급각서 등을 재단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국외시민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①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9. 2. 22. 신규 지원 신청 국외시민단체인 ’△△‘에 대해 20,000천원을 지원하면서	**【①,②관련】** **○ 통보(문책,1명)** **○ 경고(3명)** **【②관련】** **○ 통보(문책,2명)** **<별도조치>** **○ 수사의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는 등【붙임】“국외시민단체 부적정 지원 현황”과 같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위 ’△△‘ 등 2개 국외시민단체에게 지원금 합계 30,000천원을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지원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지원한 사실이 있음. **【국외단체 ▷▷ 지원에 관한 사항】…… ②**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7. 12. P의 지시에 따라 국외단체인 ▷▷에 합계 5만유로(약 66,000천원)를 공모절차없이 2차(1차 70%, 2차 30%)에 나눠 지원하면서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 등을 통해 역사 또는 독도·동해 관련 정관 명시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지원금 관련 단체 발행 영수증 및 약정이행보증금 지급각서 등도 제출받지 않았으며, 2018. 12. 18. 중간보고서 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별 평가(항목) 점수와 전체 평가위원들 합계 점수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해 검토 및 조치하지 않고, 2차 지원금 15,000유로(전체 30%)를 지급한 사실이 있음.	

【붙임】

국외시민단체 부적정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원연도 (지원일)	지원금액	시민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내용
1	2019 (2019.2.22.)	20,000	△△	-	-
2	2018 (2018.10.17.)	10,000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7	**학술회의 개최사업 지원 절차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학술회의 개최 지원사업 관리규칙('18.2.23.)」 제3조의1 제1항에 따르면 재단은 매년 학술회의 개최 지원사업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되, 보안이 요구되는 학술회의 또는 과제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학술회의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학술회의 개최 지원사업에 선정된 학술단체는 정산내역을 사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집행 증빙서는 세금계산서 또는 공공기관 발행 영수증, 법인카드 등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다른 증빙서로 대체하는 경우는 학술단체장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8. 12. 13. '▽▽'에 대해 학술회의 개최 지원사업으로 20,000천원을 지원하면서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성과 재단 전략사업이라는 이유로 공모 절차를 실시하지 않는 등【붙임】"2018년 학술회의 개최사업 부적정 지원 현황"과 같이 2018년 위 '▽▽' 등 2개 학술단체에 대해 지원금 합계 30,000천원을 지원하면서 역사 왜곡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특수성과 재단 전략사업이라는 이유로 공모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기관주의** ○ **통보** - 학술회의 개최 지원사업에 대하여 공모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절차와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붙임】

2018년 학술회의 개최사업 부적정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지원일	지원금액	지원단체명	대표자명	사업내용
1	2018.12.3.	20,000	▽▽	-	-
2	2018.12.28.	10,000	-	-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18	**특수자료 관리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특수자료 취급규칙」 제2조에 따르면 “특수자료”라 함은 간행물, 녹음테이프, 영상물, 전자출판물, 디지털 콘텐츠 등 일체의 대중전달 매개체로서 재단 보안업무규칙에 따라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집한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의 자료를 말하며, 제3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특수자료를 전담 관리할 정(부)책임자를 임명하여 특수자료의 보관관리 및 확인·점검, 특수자료의 열람·대출·복사·양도 및 회수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며, 정 책임자는 교류홍보팀장, 부 책임자는 자료실 담당자로 하며, 제5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대출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 및 대출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은 대출권수 2권(대출기간 7일), 재단직원은 대출권수 5권(대출기간 30일) 내에서 대출을 허가하고, 대출 후 반납하지 않거나 자료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특수자료 열람과 대출을 12개월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4. 27. 특수자료(간행물)를 일반인에게 대출허가하면서 정(부)책임자로 임명되지 아니한 R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2017. 4. 27.	○ **기관경고** ○ **통보** - 특수자료 관리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부터 2019. 8. 30.까지 특수자료 정(부)책임자로 임명되지 아니한 위 R 등 2명에게 특수자료 22건의 대출·열람·반납 업무를 수행하게 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2017. 2. 8. 3·1운동 특수자료(간행물)를 직원 S에게 대출허가한 후, 대출반납 기한을 68일 초과한 2017. 5. 15.에 반납받는 등【붙임】"대출 반납기한 초과 현황"과 같이 2017. 2. 8.부터 2020. 2. 23.까지 위 S 등 5명에게 특수자료(간행물) 11건을 대출허가한 후, 반납기한을 최소 4일에서 최대 68일을 초과하여 반납받고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붙임】

대출 반납기한 초과 현황

연번	관리번호	특수자료명 (간행물)	대출자		대출일	반납일		반납기한 초과일수
			소속	이름		정상	실제	
1	00012	-	-	S	17.02.08	17.03.08	17.05.15	68
2	00328	-	-	-	17.04.07	17.05.07	17.05.12	5
3	00328	-	-	-	17.06.13	17.07.13	17.09.04	53
4	00029	-	-	-	17.08.31	17.09.30	17.10.10	11
5	00022	-	-	-	17.08.31	17.09.30	17.10.10	11
6	00035	-	-	-	17.08.31	17.09.30	17.10.10	11
7	00030	-	-	-	17.08.31	17.09.30	17.10.10	11
8	00025	-	-	-	17.08.31	17.09.30	17.10.10	11
9	00328	-	-	-	17.08.31	17.09.30	17.10.10	11
10	00346	-	-	-	18.04.27	16.05.27	16.06.01	4
11	00338	-	-	-	20.01.05	20.02.05	20.02.23	18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19	**연구과제 관리 부적정** **【연구과제 평가에 관한 사항】 …… 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사업관리규정('17.12.27. 개정 전)」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최종연구결과 보고서는 연구기획위원회에서 평가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7. 12. 12. '2017년도 제7차 연구기획위원회'를 개최하여 2017년도 기획연구과제인 'ㄹ(연구책임자 T)'를 평가하지 않는 등 【붙임1】 "연구과제 미평가 현황"과 같이 2017년도 위 기획연구과제 등 36개 연구과제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연구비 지출내역서 미제출에 관한 사항】 …… ②** ○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르면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부담의 최소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 관리지침('19.1.10. 개정전)」 제13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 보고 시 주관부서에 연구비 지출 내역서를 함께 제출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 T은(는) 2018. 4. 2. 연구책임자로 참여한	**【①,③관련】** **○ 경고(1명)** **【①관련】** **○ 주의(7명)** **【②관련】** **○ 통보** - 연구비 집행 등 기획연구과제 수행 전반에서 연구책임자의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③관련】** **○ 주의(1명)**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기획연구과제 'ㄹ'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연구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붙임2】"연구비 지출내역서 미제출 현황"과 같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위 T 등 연구책임자 39명은 기획연구과제 결과보고서 87건을 제출하면서 연구비 지출 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위 재단은 2019. 1. 7. 2019년 제1차 운영기획위원회에서 연구활동비를 제외한 예산의 사용은 재단의 회계규정에 따르도록 한다며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신청 및 집행, 정산보고 의무를 규정한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 관리지침」 제11조부터 제13조를 삭제하는 규정개정안을 심의하고, 1. 10. 이사장 결재를 받아 시행한 사실이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 관리규칙('19.1.10. 개정전) > 제11조(연구비 신청 및 집행) ① 연구목적 이외에는 연구비를 일체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에 명시된 항목별 편성 금액 범위 내에서 【별표 4】를 참고하여 필요한 금액의 지급을 재단 회계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집행 기록을 보존하여야 한다. ③ 연구활동비 지급 및 여비 지급 등은 계좌 이체한다. 제12조 (항목간 예산변경) ① 항목간 예산변경 신청 시 연구책임자는 변경사유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회계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해 예산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다. ② 당초 연구비 사용계획에 없었던 비목의 신설 및 예산의 책정은 총 연구비의 10% 이내로 한다. 제13조(연구비 정산 및 결과보고)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월을 불허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결과 보고 시 주관부서에 연구비 지출 내역서 【별표 5】를 함께 제출한다. **【연구과제 책임자 관리에 관한 사항】…… ③** ○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 관리지침」 제7조에 따르면 연구수행 중 연구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 U은(는) 2019. 3. 15. 기획연구과제 ‘ㅁ’의 연구책임자로 선정되고도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기 위한 연구계획 변경을 주관부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9. 4. 30. 퇴직한 사실이 있음.	

【붙임1】

연구과제 미평가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연구 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1	T	ㄹ	2017.04.04.-2017.11.15.	39,900
2	-	-	2017.04.04.-2017.11.30.	32,000
3	-	-	2017.04.04.-2017.12.	40,000
4	-	-	2017.04.04.-2017.11.30.	40,000
5	-	-	2017.04.04.-2017.12.01.	31,500
6	-	-	2017.04.04.-2017.11.30.	21,100
7	-	-	2017.04.04.-2017.11.30.	32,100
8	-	-	2017.04.04.-2017.11.30.	36,600
9	-	-	2017.04.04.-2017.11.20	32,000
10	-	-	2017.04.04.-2017.11.	33,200
11	-	-	2017.04.04.-2017.11.10	28,000
12	-	-	2017.04.04.-2017.11.	22,000
13	-	-	2017.04.04.-2017.10.	25,000
14	-	-	2017.04.27.-2017.12.10.	14,200
15	-	-	2017.04.27.-2017.12.11.	10,000
16	-	-	2017.04.27.-2017.12.16.	9,760
17	-	-	2017.04.27.-2017.12.10.	9,000
18	-	-	2017.04.27.-2017.12.15.	9,000

연번	연구 책임자	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19	-	-	2017.04.27.-2017.12.15.	8,900
20	-	-	2017.04.27.-2017.12.05.	8,700
21	-	-	2017.04.27.-2017.12.	7,000
22	-	-	2017.04.27.-2017.11.17.	15,000
23	-	-	2017.04.27.-2017.11.30.	10,000
24	-	-	2017.04.27.-2017.11.30.	10,000
25	-	-	2017.04.27.-2017.11.30.	9,000
26	-	-	2017.04.27.-2017.12.12.	10,000
27	-	-	2017.04.27.-2017.11.	10,000
28	-	-	2017.04.27.-2017.11.30	10,000
29	-	-	2017.04.27.-2017.12.30.	10,000
30	-	-	2017.04.27.-2017.12.15.	10,100
31	-	-	2017.04.04.-2017.11.21.	26,200
32	-	-	2017.04.04.-2017.11.30.	25,000
33	-	-	2017.04.04.-2017.11.	40,000
34	-	-	2017.04.04.-2017.11.30.	40,000
35	-	-	2017.04.04.-2017.11.15.	30,000
36	-	-	2017.04.04.-2017.11.30.	22,000
합계				767,260

【붙임2】

연구비 지출내역서 미제출 현황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결과보고서 제출일	지출내역서 제출여부
		부서명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1	ㄹ	-	-	T	2017.04.04.	2017.11.15.	2018.04.02.	×
2	-	-	-	-	2017.04.04.	2017.11.30.	2018.04.02.	×
3	-	-	-	-	2017.04.04.	2017.12.	2018.04.02.	×
4	-	-	-	-	2017.04.04.	2017.11.30.	2018.04.02.	×
5	-	-	-	-	2017.04.04.	2017.12.01.	2018.04.02.	×
6	-	-	-	-	2017.04.04.	2017.11.30.	2017.12.15.	×
7	-	-	-	-	2017.04.04.	2017.11.30.	2018.04.02.	×
8	-	-	-	-	2017.04.04.	2017.11.30.	2018.04.02.	×
9	-	-	-	-	2017.04.04.	2017.11.20	2018.04.02.	×
10	-	-	-	-	2017.04.04.	2017.11.	2018.04.02.	×
11	-	-	-	-	2017.04.04.	2017.11.10	2018.04.02.	×
12	-	-	-	-	2017.04.04.	2017.11.	2017.12.22.	×
13	-	-	-	-	2017.04.04.	2017.10.	2017.12.29.	×
14	-	-	-	-	2017.04.27.	2017.12.10.	2018.04.02.	×
15	-	-	-	-	2017.04.27.	2017.12.11.	2018.04.02.	×
16	-	-	-	-	2017.04.27.	2017.12.16.	2018.04.02.	×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결과보고서 제출일	지출내역서 제출여부
		부서명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17	-	-	-	-	2017.04.27.	2017.12.10.	2018.04.02.	×
18	-	-	-	-	2017.04.27.	2017.12.15.	2018.04.02.	×
19	-	-	-	-	2017.04.27.	2017.12.15.	2017.12.26.	×
20	-	-	-	-	2017.04.27.	2017.12.05.	2018.04.02.	×
21	-	-	-	-	2017.04.27.	2017.12.	2018.04.02.	×
22	-	-	-	-	2017.04.27.	2017.11.17.	2017.12.26.	×
23	-	-	-	-	2017.04.27.	2017.11.30.	2017.12.26.	×
24	-	-	-	-	2017.04.27.	2017.11.30.	2018.04.10	×
25	-	-	-	-	2017.04.27.	2017.11.30.	-	×
26	-	-	-	-	2017.04.27.	2017.12.12.	2018.03.27.	×
27	-	-	-	-	2017.04.27.	2017.11.	2017.12.22.	×
28	-	-	-	-	2017.04.27.	2017.11.30	2017.12.29.	×
29	-	-	-	-	2017.04.27.	2017.12.15.	2018.03.30.	×
30	-	-	-	-	2017.04.04.	2017.11.21.	2018.10.11.	×
31	-	-	-	-	2017.04.04.	2017.11.30.	2017.12.26.	×
32	-	-	-	-	2017.04.04.	2017.11.	2017.12.26.	×
33	-	-	-	-	2017.04.04.	2017.11.30.	2018.04.06.	×
34	-	-	-	-	2017.04.04.	2017.11.15.	2017.12.26.	×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결과보고서 제출일	지출내역서 제출여부
		부서명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35	-	-	-	-	2017.04.04.	2017.11.30.	2018.04.09.	×
36	-	-	-	-	2018.04.09.	2018.11.30.	2018.12.27.	×
37	-	-	-	-	2018.04.09.	2018.10.26.	2018.12.27.	×
38	-	-	-	-	2018.04.09.	2018.11.30.	2018.12.27.	×
39	-	-	-	-	2018.04.09.	2018.11.30.	2018.12.27.	×
40	-	-	-	-	2018.04.09.	2018.11.30.	2018.12.27.	×
41	-	-	-	-	2018.04.09.	2018.10.25	2018.12.27.	×
42	-	-	-	-	2018.04.09.	2018.12.30.	2018.12.26	×
43	-	-	-	-	2018.04.09.	2018.10.30.	2018.12.27.	×
44	-	-	-	-	2018.04.09.	2018.11.30.	2018.12.27.	×
45	-	-	-	-	2018.04.09.	2018.12.30.	2018.12.27.	×
46	-	-	-	-	2018.04.09.	2018.12.	2018.12.27.	×
47	-	-	-	-	2018.03.21.	2018.12.	2018.12.31.	×
48	-	-	-	-	2018.03.21.	2018.12.	2018.12.31.	×
49	-	-	-	-	2018.03.21.	2018.11.30.	2018.12.31.	×
50	-	-	-	-	2018.03.21.	2018.12.10.	2018.12.31.	×
51	-	-	-	-	2018.03.21.	2018.11.30.	2018.12.31.	×
52	-	-	-	-	2018.04.17.	2018.11.30.	2018.12.31.	×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결과보고서 제출일	지출내역서 제출여부
		부서명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53	-	-	-	-	2018.04.20.	2018.11.30.	2018.12.31.	×
54	-	-	-	-	2018.04.20.	2018.11.30.	2018.12.31.	×
55	-	-	-	-	2018.03.21.	2018.11.	2018.12.26.	×
56	-	-	-	-	2018.03.21.	2018.12.	2018.12.18.	×
57	-	-	-	-	2018.03.21.	2018.12.15.	2018.12.18.	×
58	-	-	-	-	2018.03.21.	2018.10.31.	2018.12.27.	×
59	-	-	-	-	2018.05.28.	2018.11.30.	2018.12.27.	×
60	-	-	-	-	2018.03.21.	2018.12.30.	2018.12.26.	×
61	-	-	-	-	2018.03.21.	2018.11.30.	2018.12.26	×
62	-	-	-	-	2018.03.19.	2018.12.31.	2018.12.26.	×
63	-	-	-	-	2018.03.19.	2018.12.	2018.12.26.	×
64	-	-	-	-	2018.03.19.	2018.11.14.	2018.12.18.	×
65	-	-	-	-	2018.03.19.	2018.11.14.	2018.12.18.	×
66	-	-	-	-	2018.03.19.	2018.12.30.	2018.12.18.	×
67	-	-	-	-	2018.03.19.	2018.11.30.	2018.12.18.	×
68	-	-	-	-	2018.03.19.	2018.12.31.	2018.12.26.	×
69	-	-	-	-	2018.03.19.	2018.11.30.	2018.12.26.	×
70	-	-	-	-	2018.03.19.	2018.11.30.	2018.12.26.	×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결과보고서 제출일	지출내역서 제출여부
		부서명	직급	성명	시작일	종료일		
71	-	-	-	-	2018.03.19.	2018.12.20.	2018.12.18.	×
72	-	-	-	-	2018.03.19.	2018.04.30.	2018.12.18.	×
73	-	-	-	-	2018.03.19.	2018.12.01.	2018.12.18.	×
74	-	-	-	-	2018.03.19.	2018.12.01.	2018.12.18.	×
75	-	-	-	-	2018.03.19.	2018.12.01.	2018.12.18.	×
76	-	-	-	-	2018.03.19.	2018.11.30.	2018.12.18.	×
77	-	-	-	-	2018.03.19.	2018.12.20.	2018.12.26.	×
78	-	-	-	-	2018.03.19.	2018.12.07.	2018.12.26.	×
79	-	-	-	-	2018.03.19.	2018.11.30.	2018.12.26.	×
80	-	-	-	-	2018.03.19.	2018.11.30.	2018.12.26.	×
81	-	-	-	-	2018.03.19.	2017.11.30.	2018.12.26.	×
82	-	-	-	-	2018.03.19.	2018.12.10.	2018.12.18.	×
83	-	-	-	-	2018.03.19.	2018.12.20.	2018.12.26.	×
84	-	-	-	-	2018.03.19.	2018.12.10.	2018.12.18.	×
85	-	-	-	-	2018.03.19.	2018.12.15.	2018.12.26.	×
86	-	-	-	-	2018.03.19.	2018.12.15.	2018.12.26.	×
87	-	-	-	-	2018.03.19.	2018.12.	2018.12.26.	×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0	**연구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 「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재단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사업 관리 규정」 제8조에 따르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연구책임자는 개별 연구과제 수행 경과에 관해 재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간보고를 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정한 기한 내에 최종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사업 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일 전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연구재단 V은(는) 2017. 4. 27.부터 11. 30.까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여 수행한 기획연구인 'ㅂ'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7. 12. 31. 퇴직한 사실이 있으며, - 또한, 위 재단 T은(는) 2017. 4. 4.부터 11. 15.까지 기획연구인 'ㄹ'에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하고 결과보고서를 2018. 4. 2. 제출하는 등 【붙임】 "연구결과보고서 지연제출 현황"과 같이 2017. 1. 부터 2020. 4. 감사일 현재까지 위 T 등 책임연구원 35명은 기획연구 과제 84건의 결과보고서를 짧게는 3일부터 길게는 300일까지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음.	○ 경고(9명) ○ 주의(27명)

【붙임】

연구결과보고서 지연제출 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예산액	연구기간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일	지연일
		소속	성명		시작일	종료일			
1	ㄹ	-	T	39,900	2017.04.04	2017.11.15	2017.12.15	2018.04.02	108
2	-	-	-	32,0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8.04.02	108
3	-	-	-	40,000	2017.04.04	2017.12	2017.12.15	2018.04.02	108
4	-	-	-	40,0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8.04.02	108
5	-	-	-	31,500	2017.04.04	2017.12.01	2017.12.15	2018.04.02	108
6	-	-	-	32,1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8.04.02	108
7	-	-	-	36,6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8.04.02	108
8	-	-	-	32,000	2017.04.04	2017.11.20	2017.12.15	2018.04.02	108
9	-	-	-	33,200	2017.04.04	2017.11	2017.12.15	2018.04.02	108
10	-	-	-	28,000	2017.04.04	2017.11.10	2017.12.15	2018.04.02	108
11	-	-	-	22,000	2017.04.04	2017.11	2017.12.15	2017.12.22	7
12	-	-	-	25,000	2017.04.04	2017.10	2017.12.15	2017.12.29	14
13	-	-	-	14,200	2017.04.27	2017.12.10	2017.12.15	2018.04.02	108
14	-	-	-	9,760	2017.04.27	2017.12.16	2017.12.15	2018.04.02	108
15	-	-	-	9,000	2017.04.27	2017.12.10	2017.12.15	2018.04.02	108
16	-	-	-	9,000	2017.04.27	2017.12.15	2017.12.15	2018.04.02	108
17	-	-	-	8,900	2017.04.27	2017.12.15	2017.12.15	2017.12.26	11
18	-	-	-	15,000	2017.04.27	2017.11.17	2017.12.15	2017.12.26	11
19	-	-	-	10,000	2017.04.27	2017.11.30	2017.12.15	2017.12.26	11
20	-	-	-	10,000	2017.04.27	2017.11.30	2017.12.15	2018.04.10	116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예산액	연구기간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일	지연일
		소속	성명		시작일	종료일			
21	-	-	-	10,000	2017.04.27	2017.12.12	2017.12.15	2018.03.27	102
22	-	-	-	10,000	2017.04.27	2017.11	2017.12.15	2017.12.22	7
23	-	-	-	10,000	2017.04.27	2017.11.30	2017.12.15	2017.12.29	14
24	-	-	-	10,000	2017.04.27	2017.12.30	2017.12.15	2017.12.21	6
25	-	-	-	10,100	2017.04.27	2017.12.15	2017.12.15	2018.03.30	105
26	-	-	-	26,200	2017.04.04	2017.11.21	2017.12.15	2018.10.11	300
27	-	-	-	25,0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7.12.26	11
28	-	-	-	40,000	2017.04.04	2017.11	2017.12.15	2017.12.26	11
29	-	-	-	40,0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8.04.06	112
30	-	-	-	30,000	2017.04.04	2017.11.15	2017.12.15	2017.12.26	11
31	-	-	-	22,000	2017.04.04	2017.11.30	2017.12.15	2018.04.09	115
32	-	-	-	25,000	2018.04.09	2018.11.30	2018.12.14	2018.12.27	13
33	-	-	-	3,800	2018.04.09	2018.10.26	2018.12.14	2018.12.27	13
34	-	-	-	60,000	2018.04.09	2018.11.30	2018.12.14	2018.12.27	13
35	-	-	-	35,000	2018.04.09	2018.11.30	2018.12.14	2018.12.27	13
36	-	-	-	17,000	2018.04.09	2018.11.30	2018.12.14	2018.12.27	13
37	-	-	-	17,500	2018.04.09	2018.10.25	2018.12.14	2018.12.27	13
38	-	-	-	29,000	2018.04.09	2018.12.30	2018.12.14	2018.12.26	12
39	-	-	-	6,000	2018.04.09	2018.10.30	2018.12.14	2018.12.27	13
40	-	-	-	4,895	2018.04.09	2018.11.30	2018.12.14	2018.12.27	13
41	-	-	-	.	2018.04.09	2018.12.30	2018.12.14	2018.12.27	13
42	-	-	-	17,000	2018.04.09	2018.12	2018.12.14	2018.12.27	13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예산액	연구기간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일	지연일
		소속	성명		시작일	종료일			
43	-	-	-	36,000	2018.03.21	2018.12	2018.12.14	2018.12.31	17
44	-	-	-	33,300	2018.03.21	2018.12	2018.12.14	2018.12.31	17
45	-	-	-	35,000	2018.03.21	2018.11.30	2018.12.14	2018.12.31	17
46	-	-	-	27,000	2018.03.21	2018.12.10	2018.12.14	2018.12.31	17
47	-	-	-	49,000	2018.03.21	2018.11.30	2018.12.14	2018.12.31	17
48	-	-	-	25,000	2018.04.17	2018.11.30	2018.12.14	2018.12.31	17
49	-	-	-	27,000	2018.04.20	2018.11.30	2018.12.14	2018.12.31	17
50	-	-	-	37,000	2018.04.20	2018.11.30	2018.12.14	2018.12.31	17
51	-	-	-	42,000	2018.03.21	2018.11	2018.12.14	2018.12.26	12
52	-	-	-	50,000	2018.03.21	2018.10.31	2018.12.14	2018.12.27	13
53	-	-	-	50,000	2018.05.28	2018.11.30	2018.12.14	2018.12.27	13
54	-	-	-	40,000	2018.03.21	2018.11.30	2018.12.14	2018.12.26	12
55	-	-	-	29,000	2018.03.19	2018.12	2018.12.14	2018.12.26	12
56	-	-	-	26,500	2018.03.19	2018.11.14	2018.12.14	2018.12.18	4
57	-	-	-	26,700	2018.03.19	2018.11.14	2018.12.14	2018.12.18	4
58	-	-	-	.	2018.03.19	2018.11.30	2018.12.14	2018.12.18	4
59	-	-	-	46,600	2018.03.19	2018.12.01	2018.12.14	2018.12.18	4
60	-	-	-	18,000	2018.03.19	2018.12.01	2018.12.14	2018.12.18	4
61	-	-	-	1,200	2018.03.19	2018.12.01	2018.12.14	2018.12.18	4
62	-	-	-	.	2018.03.19	2018.11.30	2018.12.14	2018.12.18	4
63	-	-	-	9,000	2018.03.19	2018.12.20	2018.12.14	2018.12.26	12
64	-	-	-	34,500	2018.03.19	2018.12.07	2018.12.14	2018.12.26	12

연번	과제명	연구책임자		예산액	연구기간		보고서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일	지연일
		소속	성명		시작일	종료일			
65	-	-	-	24,000	2018.03.19	2018.11.30	2018.12.14	2018.12.26	12
66	-	-	-	16,000	2018.03.19	2018.11.30	2018.12.14	2018.12.26	12
67	-	-	-	33,000	2018.03.19	2017.11.30	2018.12.14	2018.12.26	12
68	-	-	-	49,750	2018.03.19	2018.12.20	2018.12.14	2018.12.26	12
69	-	-	-	3,000	2018.03.19	2018.12.15	2018.12.14	2018.12.26	12
70	-	-	-	10,000	2018.03.19	2018.12.15	2018.12.14	2018.12.26	12
71	-	-	-	.	2018.03.19	2018.12	2018.12.14	2018.12.26	12
72	-	-	-	40,000	2019.05.10	2019.11.15	2019.10.23	2019.11.15	23
73	-	-	-	38,000	2019.04.12	2019.11.15	2019.11.15	2019.11.22	7
74	-	-	-	38,000	2019.03.29	2019.11.15	2019.11.15	2019.11.18	3
75	-	-	-	44,300	2019.03.26	2019.11.15	2019.11.15	2019.11.20	5
76	-	-	-	33,000	2019.03.15	2019.11.15	2019.11.15	2019.11.19	4
77	-	-	-	55,500	2019.03.15	2019.11.15	2019.11.15	2019.11.21	6
78	-	-	-	28,000	2019.03.15	2019.11.15	2019.11.15	2019.11.25	10
79	-	-	-	20,000	2019.04.03	2019.12.15	2019.11.15	2019.11.26	11
80	-	-	-	23,000	2019.03.15	2019.11.15	2019.11.15	2019.11.25	10
81	-	-	-	24,000	2019.03.15	2019.11.15	2019.11.15	2019.11.26	11
82	-	-	-	30,000	2019.03.29	2019.11.15	2019.11.15	2019.12.09	24
83	-	-	-	40,000	2019.04.12	2019.11.15	2019.11.15	2019.11.18	3
84	-	-	-	30,000	2019.04.25	2019.11.15	2019.11.15	2019.11.18	3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1	**영문저널 발간 위탁 부적정** ○ 「동북아역사재단 정관」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재단은 재단의 인사·조직 및 복무에 관한 사항, 기타 재단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등에 관한 내부규정을 제정하거나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내부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예규 등으로 정할 수 있으며, 「동북아역사재단 내규관리규칙」 제2조에 따르면 “외규”라 함은 법령 및 이에 의하여 발하여진 명령, 규정, 규칙, 훈령 등 계속 구속력을 가지는 외부에서 제정한 규범적 문서를 의미하고, “규정”이라 함은 재단의 운영에 대한 기본방침, 조직관리 또는 업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정으로 확정한 것을 의미하며, “규칙”이라 함은 외규 또는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외규,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업무처리방법, 절차 등을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규칙으로 확정한 것이고, 「기타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당해 기관의 기능이나 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준, 기존의 성과수준과 소요예산 등에 대하여 철저한 사전분석을 거쳐 이를 실시하여야 하고, 외부 위탁사업에 대한 수탁기관의 선정은 원칙적으로 공모에 의한 일반경쟁을 거치고 수탁기관 선정 시의 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고,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 **기관경고** ○ **통보** - 규정에 위임없이 제정한 「동북아역사재단 영문저널 발간규칙」을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정비하기 바람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있어 재무건전성 확보, 국민 부담의 최소화,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지출의 성과를 제고하고 예산을 최대한 절감, 인건비 등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고객 등의 참여를 제고하고, 매 회계연도마다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지침을 수립하여 운용함으로써 예산의 집행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관리 등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 동북아역사재단은 2016. 3. 8. 이사회 심의·의결 및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하는 규정에 위임없이 영문저널 발간업무를 외주화 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해 「동북아역사재단 영문저널 발간규칙」을 제정하면서, 외주를 공모하지 않고, 지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제4조 제2항 지정은 재단과의 협약에 의해서나 내부심의를 통해서 이사장 결재로 진행될 수 있다. 국내유수의 대학연구기관 중 영문저작 발간의 경험이 있거나, 동아시아 역사 및 영토 문제를 국제적인 학술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연구기관이 드문 국내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신뢰할만한 위탁운영자를 지정의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다. · 그 결과, 2016. 3. 11. 자체 추진하던 영문저널 JTMS 발간업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일반경쟁을 거치지 아니하고 이사장 결재만으로 ◁◁으로 선정하는 등 【붙임】“영문저널 위탁현황”과 같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영문저널 발간업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면서 위 ◁◁ 등 2개 기관을 일반경쟁을 거치지 않고 수탁기관으로 선정한 사실이 있음.	

【붙임】

영문저널(JTMS) 발간 위탁현황

(단위:백만원)

연번	선정일자	위탁기관	연간 지원금액	선정방법	비고
1	2016.3.11.	◁◁	100	지정	
2	2017.4.25.	◁◁	100	지정	
3	2018.7.5.	◁◁	100	지정	
4	2019.5.13.	◁◁	100	지정	
5	2016.6.1.	-	100	지정	2018.4.9. 위탁 철회
6	2017.4.25.	-	100	지정	
합계			600		

감사결과 처분서

기관명 : 동북아역사재단

연번	지 적 사 항	처 분
22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 부당**	
	○ 「동북아역사재단 복무규정」 제3조에 따르면 모든 직원은 재단의 일원으로서의 사명을 명심하고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을 준수하며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업무관리규정」 제6조에 따르면 이사장은 연구기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사업을 승인하며 각 연구사업 형태와 개별 연구과제의 수행방식,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며,「동북아역사재단 시민단체지원사업규칙」 제4조에 따르면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동북아시민협력사업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요건심사(담당부서), 사업심사(심사위원회), 선정(이사장) 절차를 거치고, 사업심사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예산을 심사하며, 심사기준은 지원사업 수행실적(15점), 전문성(15점), 목적성(30점), 기여도(10점), 창의성(10점), 예산 구성의 타당성(10점), 관리의 적정성(10점)이며, 점수 합산은 최저·최고 점수를 제외한 평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통보(문책, 3명)** ○**경고(1명)** **<별도조치>** ○**수사의뢰**
	- 동북아역사재단 △은(는) 2019. 2. 22. 2019년도 국내외시민단체 지원사업(동북아현안분야) 선정 심사를 진행하면서 심사위원들은 전문성(15점), 목적성(30점), 기여도(10점), 창의성(10점), 예산 구성의 타당성(10점), 관리의 적절성(10점)을 심사(배점합계 85점)하도록 하고, 국외시민단체인 ◇◇에 대한 심사위원 평균점수 합산 시 최고점수(81점)와 최저(68점) 점수를 포함해 76.8점을 부여하였으며, 지원사업 수행실적(15점)은 심사위원이 아닌 업무담당자 W이(가) X와(과) Y와(과)	

연번	지 적 사 항	처분
	협의해 13점을 부여하여 2019. 2. 28. 위 시민단체 ◇◇에 2단계 심사 평균총점 89.80을 부여하여 심사 통과단체로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결재를 받는 등 【붙임1】“2019년도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현황”과 같이 2019년도 국내외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심사하면서 심사위원 평균점수 합산 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심사위원이 아닌 W이(가) X와(과) Y와(과) 협의해 지원사업 수행실적 점수를 부여한 심사결과를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 특히, 심사위원 평균점수 합산 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않고, 심사위원이 아닌 자가 지원사업 수행실적 점수를 부여한 결과, 동북아현안 분야에서 ♤♤(정상 심사위원평균점수 71.3점, 5순위)는 최종 13순위로 지원받지 못하고, ♧♧(정상 심사위원평균점수 68.3점, 11순위)는 최종 9순위로 지원금 8,800천원을 받고, 독도·동해 분야에서 ☆☆(정상 심사위원평균점수 67.3점, 3순위)는 최종 5순위로 지원받지 못하고, ●●(정상 심사위원평균점수 63.0점, 7순위)은 최종 4순위로 10,800천원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음. - 또한, 위 재단은 2017. 4. 14. 2017년 해외NGO 지원사업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 ■■에 대한 심사위원 점수 합산 시 최고점수(92점)와 최저(78점) 점수를 포함해 86점을 부여하는 등 【붙임2】“2017년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현황”과 같이 2017년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심사하면서 심사위원 점수 합산 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붙임1】

2019년도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단체명	과제명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산출결과				담당자 부여 점수	최종결과				선정 여부	지원금
									정상		당초			정상		당초			
				가	나	다	라	마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현안	◇◇	-	81	68	79	80	76	78.3	1	76.8	1	13	91.3	1	89.8	1	○	19,000
2	현안	-	-	78	61	82	74	76	76	2	74.2	2	13.09	89.1	2	87.29	2	○	20,000
3	현안	-	-	77	69	71	76	76	74.3	3	73.8	3	13	87.3	3	86.8	3	○	80,000
4	현안	-	-	71	71	71	75	76	72.3	4	72.8	4	13	85.3	4	85.8	4	○	42,000
5	현안	♤♤	-	71	40	79	77	66	71.3	5	66.6	11	11.75	83.1	6	78.35	13	×	
6	현안	-	-	81	69	65	72	72	71	6	71.8	5	13	84	5	84.8	5	○	13,600
7	현안	-	-	64	66	71	73	74	70	7	69.6	8	13	83	7	82.6	8	○	10,000
8	현안	-	-	69	69	71	69	72	69.7	8	70	7	13	82.7	8	83	7	○	10,000
9	현안	-	-	69	70	62	73	70	69.7	8	68.8	10	13	82.7	8	81.8	10	○	8,200
10	현안	-	-	73	65	82	69	67	69.7	8	71.2	6	12.56	82.2	10	83.76	6	○	15,000
11	현안	♧♧	-	77	69	68	65	68	68.3	11	69.4	9	13	81.3	11	82.4	9	○	8,800
12	현안	-	-	77	53	59	72	72	67.7	12	66.6	11	13	80.7	12	79.6	11	×	

연번	구분	단체명	과제명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산출결과				담당자 부여 점수	최종결과				선정 여부	지원금
									정상		당초			정상		당초			
				가	나	다	라	마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3	현안	-	-	54	59	79	60	76	65	13	65.6	14	13	78	13	78.6	12	×	
14	현안	-	-	62	58	65	67	68	64.7	14	64	16	13	77.7	14	77	15	×	
15	현안	-	-	60	56	79	63	71	64.7	14	65.8	13	11	75.7	16	76.8	16	×	
16	현안	-	-	69	58	77	57	63	63.3	16	64.8	15	13	76.3	15	77.8	14	×	
17	현안	-	-	61	74	65	55	62	62.7	17	63.4	17	11.18	73.8	18	74.58	17	×	
18	현안	-	-	62	45	71	57	67	62	18	60.4	19	13	75	17	73.4	18	×	
19	현안	-	-	62	57	62	61	67	61.7	19	61.8	18	10.9	72.6	19	72.7	20	×	
20	현안	-	-	62	45	65	61	61	61.3	20	58.8	20	10.37	71.7	21	69.17	21	×	
21	현안	-	-	62	56	65	54	54	57.3	21	58.2	21	15	72.3	20	73.2	19	×	
소계																			226,600
22	독도 동해	-	-	78	85	44	80	76	78	1	72.6	1	15	93	1	87.6	1	○	83,000
23	독도 동해	-	-	61	80	39	74	78	71	2	66.4	2	13	84	2	79.4	2	○	16,000
24	독도 동해	☆☆	-	70	80	38	57	75	67.3	3	64	3	11	78.3	4	75	5	×	
25	독도 동해	-	-	69	76	35	68	64	67	4	62.4	6	13	76	7	75.4	4	○	3,600
26	독도 동해	-	-	70	40	77	65	61	65.3	5	62.6	5	11	76.3	6	73.6	6	×	

연번	구분	단체명	과제명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평균산출결과				담당자 부여 점수	최종결과				선정 여부	지원금
									정상		당초			정상		당초			
				가	나	다	라	마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점수	순위		
27	독도 동해	-	-	75	64	28	60	66	63.3	6	58.6	7	13	76.3	5	71.6	7	×	
28	독도 동해	●●	-	77	67	51	58	64	63	7	63.4	4	13	80	3	76.4	3	○	10,800
29	독도 동해	-	-	70	30	49	77	59	59.3	8	57	8	11	70.3	8	68	8	×	
30	독도 동해	-	-	56	52	21	54	59	54	9	48.4	9	13	67	9	61.4	9	×	
31	독도 동해	-	-	0	40	44	65	59	47.7	10	41.6	10	11	58.7	10	52.6	10	×	
소계																			113,400
합계																			340,000

【붙임2】

2017년 시민단체 지원사업 심사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구분	단체명	과제명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최종결과				선정 여부	지원금
									정상		당초			
				가	나	다	라	마	점수	순위	점수	순위		
1	독도 동해	■■	-	87	88	85	92	78	86.7	1	86	2	○	15,000
2	독도 동해	-	-	84	88	85	94	86	86.3	2	87.4	1	○	10,000
3	역사	-	-	83	73	80	73	72	75.3	3	76.2	3	○	10,000
4	독도 동해 /역사	-	-	65	74	85	70	75	73.0	4	73.8	4	○	10,000
5	독도 동해	-	-	79	77	70	62	70	72.3	5	71.6	5	○	6,000
6	독도 동해	-	-	64	55	60	57	45	57.3	6	56.2	6	×	
7	독도 동해 /역사	-	-	62	39	55	36	28	43.3	7	44	7	×	
합계														51,000